

월간
재정포럼 3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9년 3월호 제153호

현안분석 •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진
•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박명호

기획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정책토론티포트 •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정책흐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고 · 박완규
현안분석	08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김 진 26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 박명호
기획	4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 재정 정책방향
정책토론 리포트	56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동향	67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외
정책흐름	7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77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78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83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84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90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92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 · 우대혜택 제공 94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96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재정통계	99 법인세 환급금 외
이슈 & 포커스	103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성장 1%P 올리려면 최대 20兆 필요” 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고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올해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3 단계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매체에 나온 세 가지 개편안을 보면 첫째, ‘시 통합+도 존속’안으로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도 체제는 유지하면서 전국 230여 개 시·군·구를 50~60 개로 통합하는 안, 둘째, ‘시 통합+도 폐지’안으로 도를 폐지하고 5~7개의 광역시와 70~80개의 통합 시·군·구 체제로 바꾸는 방안, 셋째, ‘광역도 연방’안으로 전국을 5~7개 광역도로 나누고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안 등이다. 이들 각각의 안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체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느냐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기주의 버리고 충분한 논의 과정 거쳐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행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적 전통, 행정 구역 내 주민들의 연대의식 등을 감안할 때 이 틀을 바꾸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반할 선거구의 변동에 따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표 득실, 당선 가능성 향방에 의해 개편 논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에 따라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에는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래도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대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둘 다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

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선에서 절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두 목표는 모두 중요하지만 개인이 자기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해진 소득을 가지고 지출하는 가계의 경우 가장 만족을 극대화(또는 불만을 극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출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 제도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이 크게 신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국민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대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여 즉각적이지 않은 반면, 형평성을 염두에 둔 정책은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표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효율성을 중시하는 안건이 형평성을 중시하는 안건에 패배하는 결과를 흔히 볼 수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선호의 강도가 약해 투표장이나 공청회장에 나오지 않게 되는 반면,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안건이나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더라도 선호의 강도가 매우 강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이 긴요

효율성을 중시하든, 형평성을 중시하든 모두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책의 경우 그 시행 과정상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인 형평성도 제고하지 못하면서 더불어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의 낭비를 가져와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잃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Okun의 ‘새는 양동이’로 적절히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중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포퓰리즘(populism)에 연연하지 않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정치적·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체제나 제도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유사한

.....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대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여
 즉각적이지 않은 반면,
 형평성을 염두에 둔
 정책은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많은 연구결과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는 규모의
경제 현상이 존재하는데
현재는 아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정부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험을 한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변화 후에 예상되는 새로운 문제점의 해결 방안 등을 미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히 바꾸고 나면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합의 과정 및 내용 등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정치인과 관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간주하고 지금은 경제학자의 입장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정학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소위 ‘Small is beautiful’의 관점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클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요즘에는 전자의 설득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 5일장이 서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필요한 물건을 거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교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에 살든 철에 따라 연평도의 꽃게와 충주의 사과를 구입해 먹을 수 있을 만큼 물리적 거리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 후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는 규모의 경제 현상이 존재하는데 현재는 아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정부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효율성 제고로 재원 낭비 줄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가능

기존의 지방정부가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경우 우선 예상할 수 있는 예산 절감분야는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선거비용의 절감, 의회비 절감, 민간지원경비·행사경비의 절감, 공공시설 통합 설치·운영을 통한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바로 인근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만듦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재원의 낭비 현상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방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일부 기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각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온갖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 명백하다.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문화적 전통이 유지되고 지방자치 정신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그러한 주장에 역행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방행정체제 개편만이 능사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아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삶을 위해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근시안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검토해 본 후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학자들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근시안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검토해 본
후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 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kim@kipf.re.kr)

성과정보의 생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일치된 관점이 부재하다 보니
실질적 의미에서의 성과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I. 서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비용 대비 우수한 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공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부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 또는 ‘성과예산제도’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성과예산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번에 걸쳐 성과예산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적어도 부분적이라도 성과예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구촌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과목표체계, 재정사업 성과평가, 그리고 심층적 사업 평가를 제도화하고,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성과의 환류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정보의 생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일치된 관점이 부재하다 보니 실질적 의미에서의 성과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일치된 관점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이 성과예산이다. 성과예산은 미국의 경우에도 프로그램분석평가틀(PART, 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s)의 연속선상에서 개선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게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개

선과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개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성과관리 개선의 실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성과예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예산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두 가지 방식, 즉 발생주의 도입을 통한 직접성과예산과 효과성지표를 통한 성과기반예산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소개적 성과예산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성과예산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OECD에서 정의하는 성과예산은 '재원을 측정가능한 결과에 연계하는 예산방식'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소개적 성과예산, 성과정보적 성과예산, 직접적 성과예산 등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II. 성과예산의 현황

본절에서는 성과예산제도의 정의 및 논점,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도입방식, 결과가 측정되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성과예산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과예산의 정의 및 논점

성과예산제도의 정의 및 논점에서 중요한 것이 성과정보이다. 성과정보란 프로그램, 부서,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OECD국가에서는 성과정보가 오랫동안 발전하여 왔으며, 이것이 성과예산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토대였다고 생각된다.

OECD에서 정의하는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재원을 측정가능한 결과에 연계하는 예산방식'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소개적 성과예산, 성과정보적 성과예산, 직접적 성과예산 등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소개적(presentational) 성과예산화(performance budgeting)는 단순히 성과정보를 예산서류나 다른 정부서류에 소개하는 유형이다. 정보가 목표치, 결과 또는 양자를 제시하면서 회계책임성과 의견수렴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해당된다.

성과정보적(performance-informed) 예산화(budgeting)는 간접적으로 향후 성과나 과거 성과를 재원과 연결하는 유형이다. 성과정보가 예산결정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재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성과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함께 결정과정에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가 해당된다.

직접적(direct)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성취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개적 성과예산'의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좀 더 실효성 있게 성과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적 예산'이나 '직접적 성과예산'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재원을 할당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성과예산은 OECD국가 중 일부 나라에서 특정 영역에만 사용된다. 호주의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OECD국가들의 성과예산화 과정은 다양함 그 자체이다. 그 주된 역할 또한 금융위기, 공공지출 감축기조, 정권교체 등 다양하다. 또한 많은 경우 성과정보가 예산과정에서 공공지출통제나 공공부문 관리개혁 등 좀 더 큰 패키지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과관리와 함께 성과예산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에서는 성과정보와 성과관리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위기 동안에 지출통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소개적 성과예산'의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좀 더 실효성 있게 성과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적 예산'이나 '직접적 성과예산'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성과예산의 진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재원할당, 회계제도, 그리고 성과의 명확화 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적인 토대를 잘 마련하여 성과예산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도입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성과정보를 예산자료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성과정보가 예산결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과정보가 예산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가 예산과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할당이 이루어지는 목적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 위한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예산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은 예산서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변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건성의 경우 예전에는 행정팀별로 재원이 할당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특정 환자들을 예방하는 등의 업무별로 재원이 할당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제출하는 방식은 성과정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목별 예산은 성과정보를 포함시키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모든 운영비용에 대한 단일재원분야를 갖는 예산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성과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쉽게 한다. 이는 일종의 프로그램예산체계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하나의 재원 분야에 그에 해당하는 모든 운영비용이 포함되도록 분야-부분-프로그램이 재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은 결과에 초점을 두는 예산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기존의 예산구조를 유지하면서 성과정보를 입법부에 제공하는 부속서류에 성과정보를 첨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부속서류에 성과정보를 첨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예산구조를 변경한 국가들도 성과정보와 재정정보를 예산과정에 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정부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구조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예산과 성과간에 명백한 괴리가 나타난다.

성과정보를 예산조정에 사용하는 나라들도 많다. 예산부처와 지출부처 간 예산조정, 그리고 지출부처와 부서 간 예산조정에 성과정보가 활용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산조정은 전통적으로 계획에 대한 토의가 포함된다. 성과예산화는 이러한 과정을 공식화한 것이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성과정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과정보식 예산화의 유형을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지출과 성과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과계획과 성과목표치가 필수적으로 예산과정 중에 논의되거나 승인되지도 않는다. 몇몇 나라에서는 계획과 예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경우도 있다.

예산부처는 각 부서가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 동기 부여를 하고자 세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보수나 유보, 재정적 또는 관리적 탄력성에 대한 증감, 그리고 좋은 성과는 인정되는 반면에 나쁜 성과에 대해서는 공표하여 지적하는 것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산부처는 재정적으로 보수를 주거나 징벌하기 위해 성과결과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좋지 않은 인센티브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흡한 성과는 부서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성과는 예산삭감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예산과 성과정보가 직접 연계될 경우 객관적인 정보를 부서가 제공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연계를 지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 자동적으로 10%의 예산삭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평가사업의 단위도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부처로부터의 정보는 품질이 낮고, 특정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부처는 각 부서가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 동기 부여를 하고자 세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보수나 유보, 재정적 또는 관리적 탄력성에 대한 증감, 좋은 성과는 인정되는 반면에 나쁜 성과에 대해서는 공표하여 지적하는 것 등이다.

결과측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산출에 초점을 둔 발생주의를 전폭적으로 도입하고 벤치마킹이나 상대평가방식을 이용하여 비용효과성 중심의 성과예산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표와 지적(name and shame)의 접근법은 이해하기 쉬운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된다. 영국은 병원과 학교에 대해 비교표(league table)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서비스성과에 대해 표준화(benchmark)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에 대해 정부부들의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3. 결과가 측정되는 방식

많은 OECD국가들이 성과정보가 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개선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성과정보를 예산과 관리에 도입한 정부정책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사례분석, OECD서베이, 그리고 학술지를 통해 정성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미연방정부 관리자급에 대한 연구는 42%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개선한 것으로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 분석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개혁이 시행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개별 부서에 대해 예산과정에서의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례분석도 있다. 최근의 OECD서베이에 의하면, 예산부처들은 예산부처가 예산형성과정에서 성과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지출부처를 거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공요인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유형, 유력 부처의 최고관리자의 지원, 그리고 개혁을 향한 정치적 압박 등을 들 수 있다.

투명성이 증가하였다는 강한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제공이 전부는 아니다. 객관적 정보를 생성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할당의 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아이디어인 것이다.

이후에 살펴보듯이, 결과측정에 대한 경험 또는 성과예산의 범위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성과예산의 종류가 어느 정도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측정에 대해 자신이 있는 경우, 현재의 예산구조나 예산회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결과중심의 효과성지표 위주로 성과예산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방식이라 생각된다.

결과측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산출에 초점을 둔 발생주의를 전폭적으로 도입하고 벤치마킹이나 상대평가방식을 이용하여 비용효과성 중심의 성과예산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호주의 방식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Ⅲ. 발생주의를 통한 성과예산: 호주

발생주의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발생주의회계가 예산이나 예산과정에 도입된 국가로는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주의회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발생주의예산 또는 발생주의회계를 통한 성과예산은 어느 정도 일반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는 발생주의회계가 성과관리의 개인 책임성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성과예산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공유되고 있다.

호주에서의 성과관리는 성과예산과의 연계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잘 정비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과관리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매우 충실한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것이다.

본절에서는 호주의 경우를 들어 발생주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과예산을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재정관리의 기본틀을 살펴보고, 신정부 개념인 정부지배구조를 분석한 후, 예산과정에서 성과정보가 활용되는 측면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재정관리 기본틀

호주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아지는 반면에 고령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노정되면서 예산과 재정보고서에 대한 고강도의 책임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부서에 더 큰 순응부담이 요구되었다. 요약건대, 정부의 새로운 접근과 재정책임성을 포함한 관리책임의 증가, 그리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성 증가가 시도되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재정관리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의회가 밀접한 관계인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정부가 이원화되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즉, 각 조직마다 장관과 최고책임자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장관은 정부에 속하여 의회와 함께 정책결정에 집중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틀에 따라 각 조직의 행정을 최고책임자가 담당하여 시행한다.

재정관리 기본틀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재정결정 및 정보생산, 둘째로 재정지배구조, 셋째로 재정책정이다. 재정결정 및 정보생산의 단계는 투자, 인력, 운영에 따라 계획, 집행, 평가의 순으로 명령, 기록, 보고를 통해 형성하게 된다. 재정지배구조의 단계는 개선 및 유지의 취지로 정책, 과정, 기술, 위험, 통제, 절차의 순으로 진행되도록 형식화하였다. 재정책정의 단계에서는 순

호주에서의 성과관리는 성과예산과의 연계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잘 정비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과관리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매우 충실한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것이다.

호주의 성과관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책임성의 분권화라 할 수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매우 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성과정보의 생산과 유의미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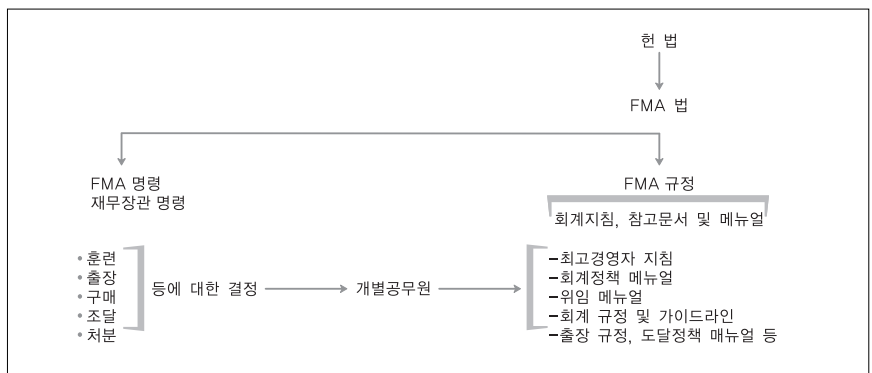
응도 모니터링과 성과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 기본틀이 잘 유지되기 위해 부서들은 과정흐름, 과정비용, 과정가치를 도식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서는 위험, 통제, 증빙을 확실히 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내부적·외부적으로 순응 여부를 나타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투입, 산출, 그리고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내어야 한다.

재정관리의 법적·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재정입법과 개별 공무원과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 [그림 1]이다. 헌법과 재정관리법(FMA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재정결정의 범위가 주어지면 다양한 종류의 매뉴얼 등을 통해 훈련, 출장, 구매, 조달, 처분 등의 재정결정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매우 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성과정보의 생산과 유의미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이다. 모든 재정결정에 대한 비용과 산출이 발생 시점에 생성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즉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과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림 1] 호주의 연방정부회계규정과 개별공무원



호주의 성과관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이러한 책임성의 분권화라 할 수 있다. 1901년에 제정된 회계법을 대체하는 재정관리법이 1997년에 제정되면서 매일매일의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장관에게서 최고경영자로부터 부서 공무원 모두에게로 이양된 것이다. 공무원들은 책임감 있게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에 순응하게 실행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최고경영자지침이 개별 공무원을 입법 및 행정 정책에 어떻게 연결시켜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고경영지침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

다. 최고경영지침은 모든 부서 인력, 계약된 회사나 개인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지침이다. 이 지침은 출장, 조달, 현금사용, 공공건물사용, 선물 등의 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범법행위는 재정관리법의 범법조항, 즉 최고 7년의 실형과 다른 입법의 범법조항과 일치되도록 한다.

연방정부조달 가이드라인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건물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매 원칙으로 비용효과성(value for money)을 실재화하였다. 비용효과성은 (i) 비차별을 보장하고 경쟁조달과정을 사용함으로써, (ii) 재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그리고 (iii)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재정관리법에 적용되는 모든 부서의 최고경영자는 반드시 재정관리에 대해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사인을 한 증빙(certificate)은 입법적 또는 행정적 정책과의 순응도, 합의된 자원의 운용, 적절한 재정위험관리전략의 채택,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범법행위에 대한 복구활동 등에 중점을 둔다.

2. 정부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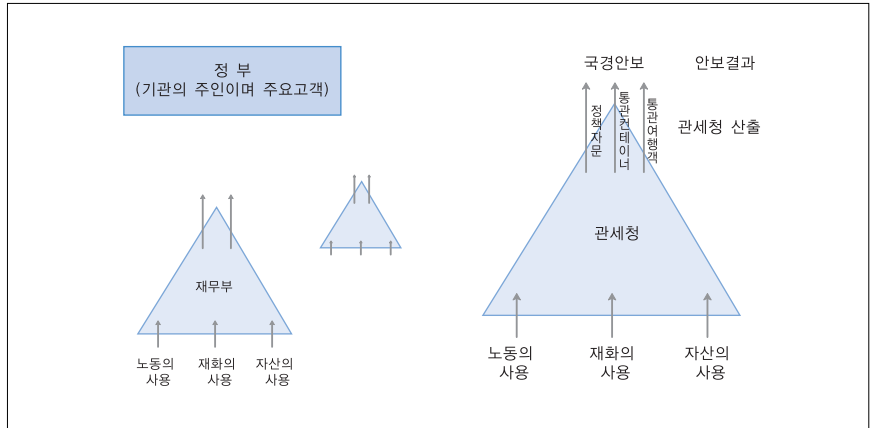
정부의 결과물에 대한 논의는 부서지배구조로부터 시작한다. 호주에서 진행된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입법 및 행정 환경, 발생주의 결과 및 산출, 부서의 새로운 접근법, 수동적인 공공관리로부터 능동적인 부서지배구조로의 전환 등이 그 주요 논점이 된다.

[그림 2]는 '결과 및 산출의 기본틀'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부서인 호주 관세청을 도식화한 것이다.

호주에서는
건물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연방정부조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매원칙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실재화하였다.

관리는 지배구조를 필요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한 조직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조직의 구조는 어떠한지, 조직문화는 어떠한지, 정책이나 전략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포괄하는 것이 지배구조인 것이다.

[그림 2] '결과 및 산출의 기본틀'로 본 정부와 부처



[그림 2]에서 정부와 호주 관세청이 분리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담당 장관은 정부에 속해 있어 관세청의 소유자로 주고객이 된다. 관세청의 최고경영자 이하 직원들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회사로 인식된다. 정책결정자인 장관이 국경 안전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는 데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투입을 통해 호주 관세청 산출을 생산한다. 이때 투입요소로는 노동, 재화 및 서비스, 자산 등의 활용이다. 산출은 컨테이너 통관, 항공여객 통관, 그리고 정책권고 등이다. 여기서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하여는 발생주의 회계와 벤치마킹을 통해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이러한 공공행정으로부터 지배구조로의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행정은 입법과정을 준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관리는 지배구조를 필요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한 조직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조직의 구조는 어떠한지, 조직문화는 어떠한지, 정책이나 전략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포괄하는 것이 지배구조인 것이다.

한 부서의 지배구조 기본틀은 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조, 위원회체계, 책임성 기본틀, 내부적인 결과 및 산출 구조, 과정, 그리고 사업모형(business model) 등을 포괄한다. 간단한 조직구조를 생산과 지원의 개념으로 구성하면 위는 장관과 최고경영자, 그리고 각종 위원회로 구성된 지배구조를, 아래는 장관과 최고경영자, 그리고 각 부서의 장들로 이루어진 조직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상의 장관들에 대한 허가서, 장관들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지시, 최고경영자의 각 부서장에 대한 허가서, 조직의 성과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그리고 개인 성과관리협약으로 이루어진 체계는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계약적(contractual) 접근을 나타내고 있다.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은 투입-산출-결과의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난다.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데, 측정 가능성과 측정 불가에 따라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투입-산출-결과의 단계법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결과에 대한 대리지표(indicator)를 사용한다. 산출을 측정하는 방식은 투입의 차원을 품질, 수량, 적시성, 그리고 비용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즉, 어떤 산출을 최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때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품질을 줄이거나, 수량을 줄이거나, 전달시기를 늦추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해야 한다.

사업모형은 호주에서 편만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부서의 지배구조 기본틀의 한 부분으로, 수입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사업모형은 정부의 전략목표 또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단계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물론 입법과 보고의 의무사항을 달성하는 조건하에서이다.

정부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서에게 장기 전략방향을 제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국방백서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국방전략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i)호주 영토를 어떠한 유효공격으로부터라도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ii)인접국가의 안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iii)국익과 연관된 국제우방국들에게 공헌하여야 한다. 그리고 (iv)더 광범위한 국익을 보장하는 임무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예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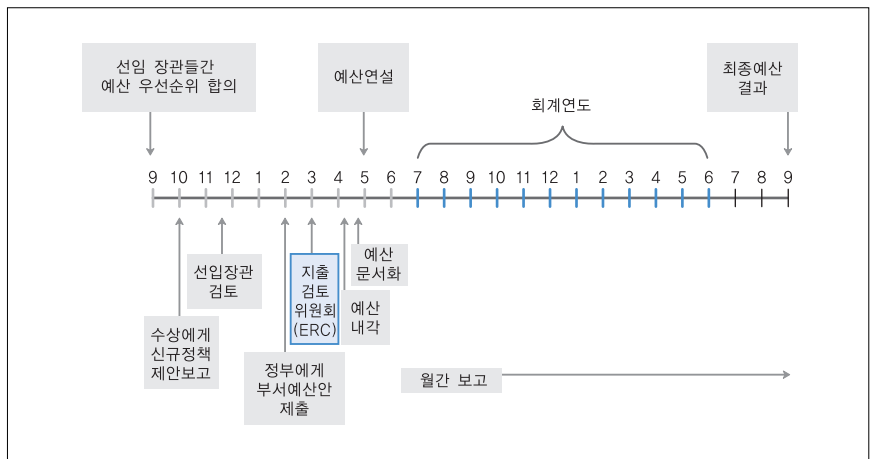
소위 전략계획, 사업계획, 그리고 재원의 기본틀을 이용한 예산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5년 주기의 '정부 전략지침 및 가이드선스'가 주어지면 각 부서가 10년 기간의 '전략계획'을 짠다. 그러면 '예산연도에 대한 지침'이 주요 기능에 대한 전략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또한 '예산연도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이 인력, 시설, 주요 장비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전략계획이 작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합관리재정계획'이 주어지면 각 활동과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한 후 '부서예산'이 결정된다. 통합관리재정계획과 부서예산은 예산요구의 일부로서 정부에 제출된다.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은 투입-산출-결과의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난다.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데, 측정 가능성과 측정 불가에 따라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모든 부서는 발생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재원을 부여받는데 부서가 발생주의 관리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특별하게도, 모든 공무원은 거래의 기록 및 보고에 관계되어야 한다.

[그림 3]은 연방정부의 2년 주기 예산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시작한다.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에 선임장관들이 선임관리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합의한다. 10월에는 신규정책제안(NPP)을 수상에게 보고한다.

[그림 3] 호주의 연방정부회계규정과 개별공무원



선임장관들의 검토의견은 11월에 작성된다. 부서예산이 정부에 2월에 제출된다. 지출검토위원회가 3월에 활동한다. 4월에 예산내각이 형성된다. 또한 이 즈음에 예산문서 및 요약이 제시된다. 5월에 예산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되어 결정한다.

이러한 인력재정관리위원회(WFMC)는 최고경영자가 의장이 되고 최고회계담당관과 인사담당관이 자문위원이 된다. 위원회 서류와 의원회 결과물을 준비하는 비서관에 의해 지원받는다. 특히, 신규정책제안양식을 통해 인력재정관리위원회에 모든 예산제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재정관리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매월 검토한다.

호주의 모든 부서는 발생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재원을 부여받는데 부서가 발생주의 관리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특별하게도, 모든 공무원은 거래의 기록 및 보고에 관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생주의회계에 근거한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어휘와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회계가 더 이상 회계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팀 또는 실, 국 차원의 운영은 회계정책매뉴얼, 매뉴얼차트, 회계정보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부서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IV. 효과성지표를 통한 성과예산: 미국

1. 성과예산구조

미국의 성과기반예산(performance-based budget)의 시작은 정부성과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다. 관리예산처(OMB) 지침 A-11의 제6부는 GPRA에 순응하기 위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연방부처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GPRA는 전략계획, 연간성과계획, 연간프로그램성과보고서를 준비하도록 강제한다. 지침의 제6부 제220절은 GPRA 연간성과계획을 논의하면서 부서들이 성과예산을 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과예산은 연간성과계획과 부서예산요구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과예산이 9월 OMB에, 그리고 2월 하월에 제출할 용도이다.

OMB는 성과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과예산은 성과목표와 성과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성과예산은 장기 또는 연간 성과목표로 이루어진 전략목표와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공헌한 특정 활동들의 비용을 연계한 것이다.

지침의 제6부 제220절은 성과예산은 부서가 한 회계연도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의 조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조망은 각각의 전략목표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물들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과목표치를 포함한다.

성과예산은 목표들의 구조체인 피라미드 위계로 조직된다. 피라미드의 상부에 전략계획이 있는데, 이는 부서 전략계획에 집중된 취지나 목적에 대한 천명이다.

예산요구는 전략목표를 향하여 계획된 진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기준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산출과 결과는 PART를 거쳐 검증된 성과지표나 목표치이어야 하고, 성과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해 요구된 자원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만큼이어야 한다. 자원은 프로그램 단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부서는 성과목표치 수준에서 자원을 연결하도록 복돋운다. 성과예산은 성과목표 각각에 대해 6년 정도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GPRA나 행정부의 성과예산에 대한 요구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다양한 연방프로그램 모두를 뒷받침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전의 주관적인 선별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에 한계가 노정되었다. 그래서 하원이나 행정부는 각 부처의 임무에 대한 결과, 그리고 책임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OMB는 성과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과예산은 성과목표와 성과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성과예산은 장기 또는 연간 성과목표로 이루어진 전략목표와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공헌한 특정 활동들의 비용을 연계한 것이다.

성과기반예산 또는 성과예산의 출발점은 부처의 전략계획에 연계된 연방프로그램에 대해 성과목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과목표는 성과의 의도된 수준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성과목표는 성과지표, 목표치, 그리고 시간표로 구성된다.

을 선별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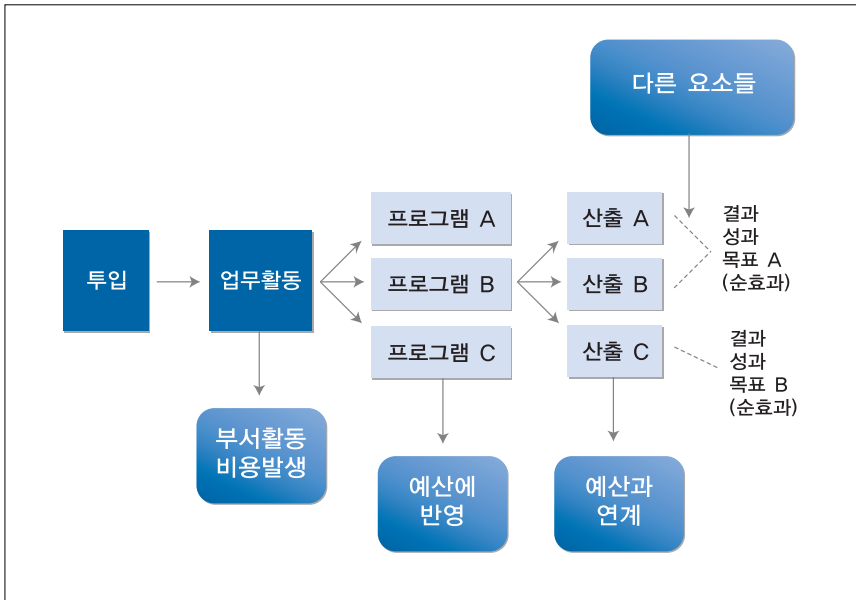
성과예산은 부서전략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GPRA 제306절에는 부서전략계획과 계획에 대한 6가지 의무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이 중 4번째 의무사항은 전략계획과 GPRA의 연간성과계획 필수사항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행정부의 성과예산은 이 연계성을 충족해야 한다.

GPRA 제1115절에는 연간성과계획에 대한 6가지 의무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이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 산출 및 결과를 포괄하는 연간프로그램 성과목표로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성과기반예산 또는 성과예산의 출발점은 부처의 전략계획에 연계된 연방프로그램에 대해 성과목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과목표는 성과의 의도된 수준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성과목표는 성과지표, 목표치, 그리고 시간표로 구성된다.

연간성과계획 자원 요구량을 더함으로써 성과예산을 구성하는 데에 OMB에서 요구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된다. OMB는 자원과 결과의 구체적인 연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성과예산의 근간은 이러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A-11의 제2부 제51절은 예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당화 자료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다. 주요 제안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연도와 예산연도의 프로그램과 전략목표들의 성과목표치, 결과와의 연계성, 그리고 성과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과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요구량이 제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총비용(full cost)을 가능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계정과 프로그램활동을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야만 한다. 통합예산성과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과정, 기술 등을 포함하여 수단과 전략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정보가 PART를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성과기반예산 또는 성과예산의 주요 요인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성과예산 주요 요인의 관계



성과측정, 성과지표의 선정, 결과의 효과성 측정, 프로그램결정을 하기 위한 지표선정, 데이터 수집비용을 감안한 지표선정 등을 거쳐 성과지표를 결정한다. 물론 SMART의 방식, 즉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의욕적이고, 실질적이고, 적시적이어야 한다.

2. 성과측정

미국 성과예산에서도 성과의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결과나 산출로 목표나 목적이 설정되면 이러한 목표나 목적이 달성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성과측정, 성과지표의 선정, 결과의 효과성 측정, 프로그램결정을 하기 위한 지표선정, 데이터 수집비용을 감안한 지표선정 등을 거쳐 성과지표를 결정한다. 물론 SMART의 방식, 즉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의욕적이고(ambitious), 실질적이고(realistic), 적시적(time-bound)이어야 한다.

성과지표의 수는 소수이어야 하고 이를 예산이나 관리의 결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예산의 과정에서 OMB와 각 부처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산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지표들은 PART의 절차를 거치고 내부적 또는 외부적인 예산보고에 사용된다.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효율성지표(efficiency measures)와 효과성지표(effectiveness measures)로 분류된다. 효율성지표는 일을 잘하는 것(Doing Things Right)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효과성지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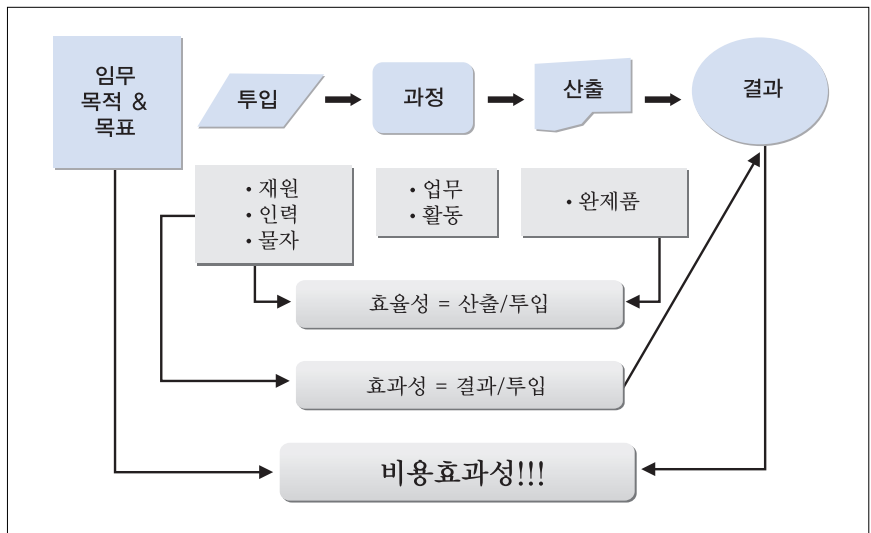
효율성지표는 산출과 주로 관련이 있다. 즉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구성된다. 산출당 단위비용, 회임주기, 노동생산성, 인원당 고객 수 등이 포함된다. 효과성지표는 결과와 주로 관련이 있다. 즉, 투입 대비 결과의 비율로 구성된다. 품질지표, 고객만족도, 인적개발 등이 포함된다.

(Doing the Right Thing)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효율성지표는 산출과 주로 관련이 있다. 즉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구성된다. 산출당 단위비용, 회임주기, 노동생산성, 인원당 고객 수 등이 포함된다. PART와 최근의 예산성과통합(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 이니셔티브도 각 프로그램마다 적어도 하나의 효율성지표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효과성지표는 결과와 주로 관련이 있다. 즉, 투입 대비 결과의 비율로 구성된다. 품질지표, 고객만족도, 인적개발 등이 포함된다. 비용효과성지표는 결과당 단위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비용회계체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을 때에라도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5]는 미국 성과예산에서 주로 사용되는 효율성지표와 효과성지표, 그리고 비용효과성지표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효율성지표와 효과성지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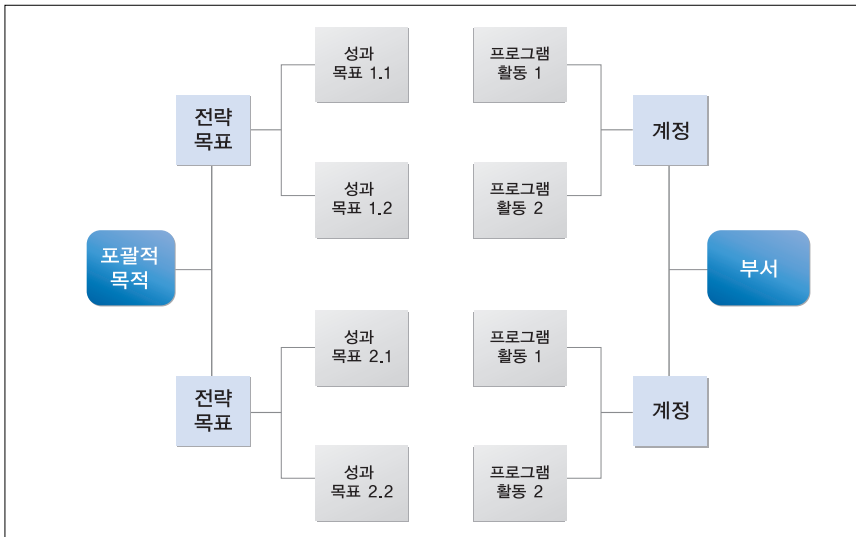


3. 예산과정

부서는 예산계정에 좀 더 프로그램을 표시하도록 그리고 성과에 초점을 두도록 충력을 기울여왔다. [그림 6]은 기본적인 형태의 성과예산형태를 나타낸다.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성과목표들에 대해 프로그램 및 활동 등이 연결되어

예산계정을 형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림 6] 성과와 예산의 조정 및 연계



미국의 성과예산은 예산결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예산 및 성과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며, 프로그램성과를 제고하고, 하원의 예산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산계정구조는 다양한 목적을 두기 때문에 상이하게 조직화된다. 2005년 GAO 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정부기관이 예산계정을 성과와 재원을 잘 연계하기 위하여 재조정하였다.

성과기반예산은 예산의 초점을 비용을 초래하는 투입에 두지 않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측정 가능한 결과에 둔다. 성과예산은 체계적으로 부서의 예산요구와 그 성과기대치에 연계하고 있다. 성과결과와 성과산출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예산구조가 돈과 사용된 자원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성과예산은 성과계획에 열거된 성과목표와 제안된 예산을 통한 프로그램활동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성과예산은 예산결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예산 및 성과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며, 프로그램성과를 제고하고, 하원의 예산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계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지만, 곧 효율성지표와 효과성지표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항목도 부서별로 제출되기 때문에 총비용을 계산하는 데 쉽게 활용된다. 이것은 문서화함으로써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는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자체적인 관리 및 평가를 성과에 연동하여 진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역동성을 구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투명성과 성과정보화를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는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자체적인 관리 및 평가를 성과에 연동하여 진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역동성을 구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로 인한 내·외부적인 상대적 평가의 제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세련화(refinements)를 도출하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 중앙 정부기관에 대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의무화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mission),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의 성과지표 등이 제시되어 하나의 성과목표체계를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되었다. 성과목표체계를 공개하고 또한 이에 준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성과평가를 받음으로써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었고, 지방 및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도 성과목표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K-PART의 진전은 사업별로 성과정보를 통해 투입과 산출 그리고 성과가 유기적으로 이해되며 조직의 임무가 명료해지고 성과평가의 환류가 제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성과정보의 제고 및 재정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성과정보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성과예산에 대한 모색이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과연 우리가 성과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최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진전되고 있는 성과예산 통합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성과정보의 예산과의 연계, 즉 성과예산의 추진방식을 성과정보의 생성 측면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다. 먼저 발생주의회계와 발생주의예산을 통해 직접성과예산을 추진하는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효율성지표와 효과성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성과기반예산을 추진하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이외 다른 나라들의 성과예산도 다르다.

그렇지만, 현재 재정개혁 1단계를 마무리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개적 성과예산에서 직접성과예산으로 추진할지, 성과기반예산으로 추진할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접성과예산은 회계제도가 범국민적으로 인식되고 원가할당이 비교적 보편화된 나라에서 진행된다. 거래 발생 시점에서 성과와 원가를 계산하는 문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회계시스템이 정착되고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될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성과예산은 벤치마킹 또는 상대평가방식이 비교적 용이한 보건, 교육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직접성과예산방식을 실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과정보적 예산화 또는 미국의 성과기반예산이 현실적으로 더 선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기본틀이 미국의 예를 많이 준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성과정보를 효율성지표와 효과성지표로 압축하고 있는 추세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재정개혁의 차원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적용할 성과예산을 찾는다면 성과기반예산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성과정보가 원가배분과 총원가산정에 유리한 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또는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직접성과예산을 선별적으로 실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성과정보적 예산화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KIPF**

예산회계시스템이 정착되고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될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Curristine, T, "Government Performance: Lessons and Challenges," *OECD Journal on Budgeting* 5(1), 2005a, pp.127~151
- Curristine, T, "Performance Information in the Budget Process: Results of the OECD 2005 Questionnaire," *OECD Journal on Budgeting* 5(2), 2005b, pp.87~131
- OECD, *Modernising Government: The Way Forward*, 2005
- OECD, *Performance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07
- OECD, "Performance Budgeting: A Users' Guide," Policy Brief, 2008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ecpmh@kipf.re.kr)

미분양 문제가
사회적·경제적 쟁점이
되는 이유는 미분양 주택의
과도한 적체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I. 서론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야기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중에 있다. 특히 작년 초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 문제가 심해지자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건이 넘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가계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미분양 대책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주택 미분양 현상이 수도권까지 확산됨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분양 문제가 사회적·경제적 쟁점이 되는 이유는 미분양 주택의 과도한 적체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중견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주택시장 침체 및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¹⁾.

특히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작금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도소득세

1) 김덕례(2008)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미분양 문제의 해소 없이 세수손실만을 야기하고 조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²⁾.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의결하였다³⁾.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최종 확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과거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세 차례의 한시적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해소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먼저, 미분양의 현황 및 추이를 조사하고, 최근 미분양 문제의 원인 및 그 파급효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한시적 양도세 감면 내용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각종 시계열 자료를 통해 기존의 한시적 양도세 감면 정책이 미분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녔는지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Ⅱ. 본론

1. 미분양 현황 및 문제점

미분양 주택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거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은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미분양 주택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그 발생시점에 따라 크게 ① 청약 및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남아있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과 ② 사용승인(준공)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미분양 주택의 규모는 지역별(16개 시·도), 규모별(60m² 이하, 60~85m², 85m² 초과), 공급주체별(민간 부문, 공공부문)로 분류되어 그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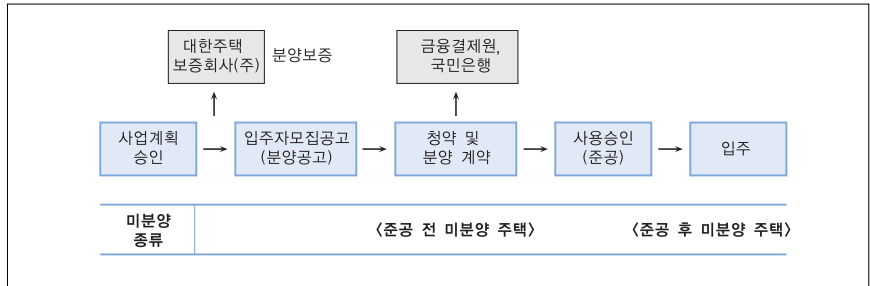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과거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조항은 지원방안의 적용시한이 지나더라도 수혜자가 주택을 아주 먼 미래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계속하여 법률에 존속하여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동 감면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3)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사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5년간 양도세를 60% 감면한다.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서울, 인천 및 성남·과천 등 경기도에 속한 14개 시를 가리킨다.

2008년 10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15만 5,700여 호로
외환위기로 인해
미분양 주택 수가 정점에 달했던
1998년 7월말 11만 6,400여 호를
추월한 상태이다.

[그림 1] 발생시점별 미분양 주택의 종류



자료: 김덕례(2008)

2008년 10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155,720호로 외환위기로 인해 미분양 주택 수가 정점에 달했던 1998년 7월말 116,433호를 추월한 상태이다. 먼저, 발생시점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말 현재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비중은 약 74.7%이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비중은 약 25.3%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비중은 2006년 6월말 이후 10% 중후반대를 나타내다가 2008년 6월말부터 2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준공 전 미분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분양된 물량이 많아졌음을 나타낸다.

<표 1> 발생시점별 미분양 추이

(단위: 호, %)

구분	1998년 12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8년 10월	증감률 ('08년 10월 기준)		
					'98.12 대비	'06.12 대비	'07.12 대비
계	102,701	73,772	112,254	155,720	51.6	111.1	38.7
준공 전	84,599	60,118	94,859	116,256	118.0	189.0	126.9
	(82.4)	(81.5)	(84.5)	(74.7)			
준공 후	18,102	13,775	17,395	39,464	37.4	93.4	22.6
	(17.6)	(18.5)	(15.5)	(25.3)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국토해양부.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조사해 보면, 2008년 10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의 약 83.8%인 130,458호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는 25,262호로 16.2%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7년 12월말보다 수도권은 72.7%, 지방은 33.6% 증가한 수치이고, 2006년 12월말보

다는 수도권은 약 5.3배, 지방은 1.9배 정도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약 9.1% 감소한 반면 지방은 73.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하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미분양 주택 수 분포의 분산이 작아지다가 최근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이후의 지역별 미분양 현황 추이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 비중은 2007년 5월말 95.5%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도권의 미분양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미분양 문제가 최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당시의 미분양은 주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의 미분양 문제는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2〉 지역별 미분양 추이

(단위: 호, %)

구분	1998년 12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8년 10월	증감률 ('08년 10월 기준)		
					'98.12 대비	'06.12 대비	'07.12 대비
계	102,701	73,772	112,254	155,720	51.6	111.1	38.7
수도권	27,481	4,724	14,624	25,262	-9.1	434.8	72.7
	(26.8)	(6.4)	(13.0)	(16.2)			
지방	75,220	69,048	97,630	130,458	73.4	88.9	33.6
	(73.2)	(93.6)	(87.0)	(83.8)			

주: ()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토해양부.

규모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말 현재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 수는 86,666호로 전체 미분양의 55.7%를 차지하였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69,054호로 약 44.3%를 차지하였다. 한편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의 미분양은 6,963호로 전체 미분양의 4.5%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미분양 규모별 분포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였던 외환위기 직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말 중대형 주택의 미분양 비중이 약 25.7%이고, 국민주택 규모 미분양 비중은 74.3%, 이중 소형 주택의 미분양은 31.7%였다. 즉 외환위기 당시의 미분양은 주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의 미분양 문제는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대형 주택 중심의 미분양 문제는 최근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12월말과 비교

최근의 미분양은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할 때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미분양 주택 수는 63.6%나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 규모의 미분양 주택은 16.4%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 전반적으로 미분양 주택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주택의 미분양이 중소형 주택의 미분양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3〉 규모별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호, %)

구분	1998년 12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8년 10월	증감률 ('08년 10월 기준)		
					'98.12 대비	'06.12 대비	'07.12 대비
계	102,701	73,772	112,254	155,720	51.6	111.1	38.7
60m ² 이하	32,529 (31.7)	6,003 (8.1)	5,764 (5.1)	6,963 (4.5)	118.0	189.0	126.9
국민주택 (85m ² 이하)	76,261 (74.3)	46,353 (62.8)	59,292 (52.8)	69,054 (44.3)	118.0	189.0	126.9
85m ² 초과	26,440 (25.7)	27,419 (37.2)	52,962 (47.2)	86,666 (55.7)	37.4	93.4	22.6

주: ()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토해양부.

마지막으로 공급주체별로 미분양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0월말 현재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 규모가 154,886호로써 전체 미분양의 9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말 대비 증가율을 보면 '06년보다 115.7%, '07년보다 39.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 규모는 834호로 겨우 전체 미분양의 0.5% 정도만을 차지하고, '06년말과 '07년말 대비 각각 67.3%, 45.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의 미분양이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말과 비교하면 공급주체별 미분양 분포의 분산이 더욱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 공급주체별 미분양 추이

(단위: 호, %)

구분	1998년 12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8년 10월	증감률 ('08년 10월 기준)		
					'98.12 대비	'06.12 대비	'07.12 대비
계	102,701	73,772	112,254	155,720	51.6	111.1	38.7
민간부문	81,098	71,818	110,715	154,886	91.0	115.7	39.9
	(79.0)	(97.4)	(98.6)	(99.5)			
공공부문	21,603	1,954	1,539	834	-96.1	-67.3	-45.8
	(21.0)	(2.6)	(1.4)	(0.5)			

주: ()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토해양부.

현행 미분양 문제를
 가급적 빨리 완화하기
 위하여 외환위기 당시
 실시하였던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비과세 허용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정책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이처럼 2005년 말 이후 민간부문에서 지방에 공급하는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세제 및 규제강화 정책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김현아, 2007). 최근에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가구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의 확대가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기존 주택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공급과 높은 분양가가 미분양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덕례, 2008).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과 미분양 적체의 장기화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투입시점과 자금 회수시점간의 시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이는 지방의 중소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자금경색을 심화시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지방의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와 지방의 경기하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미분양으로 시행사·시공사들의 자금부담이 누적되면 부동산 관련 PF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언급한 미분양에 대한 우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미분양 문제를 가급적 빨리 완화하기 위하여 외환위기 당시 실시하였던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비과세 허용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따라 개편되어 왔고, 이러한 잦은 개편은 양도소득세의 정책방향을 2~3년마다 선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 외환위기 이후 주택 미분양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의 특징은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지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인 자본이득(capital gain)에 과세하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부동산 관련 정책세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통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거나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배제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자주 활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따라 개편되어 왔고, 이러한 잦은 개편은 양도소득세의 정책방향을 2~3년마다 선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외환위기 이후 과도하게 높아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였다. 동 조세특례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⁴⁾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양도차익은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해진다.

차감되는 양도차익

$$= \text{양도소득금액} \times \frac{(\text{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text{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러한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격 요건은 양도자 요건과 취득 유형 요건 및 신축주택 취득기간으로 나뉜다. 그리고 특정지역 및 특정규모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상이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적용된다.

먼저 양도자 요건을 살펴보면, 양도자는 취득시 및 양도시에도 모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시에는 거주하였지만 양도시에 비거주자이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한편 취득 유형 조건을 살펴보면,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4)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며, 신축주택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 2배 이내의 토지는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사례⁵⁾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대한 규정에 따라 크게 3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양도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1998년 5월 22일~1999년 6월 30일⁶⁾인 경우이다. 2차 양도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2000년 11월 1일~2001년 12월 31일이다. 이러한 2차 양도세 감면 사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3차 양도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2001년 5월 23일~2002년 12월 31일⁷⁾인 경우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술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또는 과거의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자의 판매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택, 계약 해제 후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당초 계약했던 주택을 재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양도세 감면이 허용된 신축주택 취득기간 동안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양도세 감면기간인 1998년 5월말부터 1999년 6월말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08,339호에서 78,050호로 30,289호가 감소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동 기간 내에 24,933호가 감소하여 전체 감소량의 82.3%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민주택 규모의 미분양은 동 기간 동안 80,700호에서 57,789호로 22,911호가 감소하여 전체 감소량의 7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2차 양도세 감면기간과 3차 양도세 감면기간이 서로 겹침에 따라 2차와 3차 감면 기간 동안의 미분양 추이를 동시에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0월말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58,250호에서 24,923호로 33,327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17,439호가 감소하여 전체 감소량의 52.3%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민주택 규모의 미분양은 동 기간 동안 41,349호에서 19,726호로 21,623호가 감소하여 전체 감소량의 6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양도세 감면 기간과 2·3차 양도세 감면 기간 동안의 미분양 추이를 살펴본 결과, 1차 양도세 감면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외환위기 이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6)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7)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 밖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적용되었다.
8) 국민주택에 대한 1차 감면기간은 1999년 12월말까지로 그 시점에 서의 미분양은 51,866호여서 1차 감면기간 동안 28,834호가 감소하였다.

2·3차 감면 기간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미분양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중대형 규모의 미분양 해소가 1차 감면 기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양도세 감면 기간과 2·3차 양도세 감면기간 동안의 미분양 추이를 살펴본 결과, 1차 양도세 감면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2·3차 감면 기간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미분양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중대형 규모의 미분양 해소가 1차 감면 기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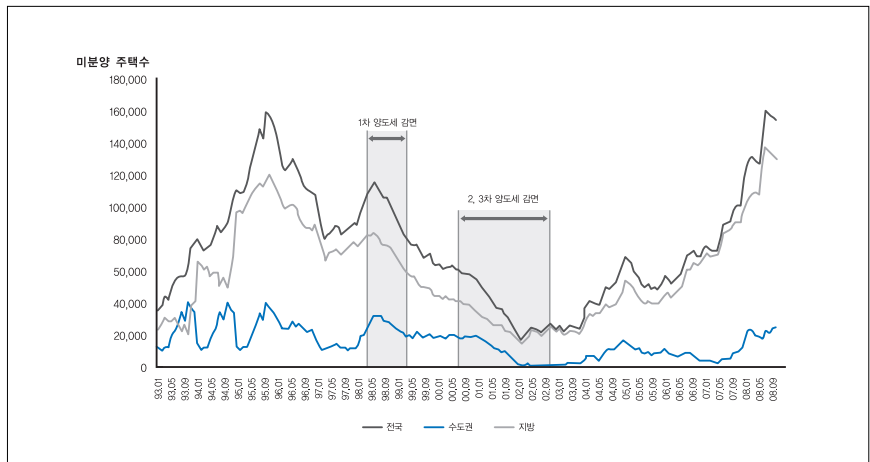
〈표 5〉 양도세 감면기간 동안의 미분양 추이

(단위: 호, %)

구분	1차 양도세 감면			2·3차 양도세 감면			
	'98.5.말	'99.6.말	감소량	'00.10.말	'02.12.말	감소량	
전국	108,339	78,050	30,289	58,250	24,923	33,327	
지역별	수도권	25,598 (23.6)	20,242 (25.9)	5,356 (17.8)	18,826 (32.3)	1,387 (5.6)	17,439 (52.3)
	지방	82,741 (76.4)	57,808 (74.1)	24,933 (82.3)	39,424 (67.7)	23,536 (94.4)	15,888 (47.7)
규모별	중대형	27,699 (25.6)	20,261 (26.0)	7,438 (24.4)	16,901 (29.0)	5,197 (20.9)	11,704 (35.1)
	국민주택	80,700 (74.4)	57,789 (74.0)	22,911 (75.6)	41,349 (71.0)	19,726 (79.1)	21,623 (64.9)

주: () 안은 각 열의 전국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2] 양도세 감면 이후 미분양 추이



한편 1차 양도세 감면 기간인 1998년 6월~1999년 6월 동안 월평균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는 22,838건이었다. 그리고 1차 양도세 감면이 시작되기 직전 1년간의 월평균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는 43,921건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1차 양도세 감면 기간 동안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기간 중 미분양 감소가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주택수요 증가에 의해 미분양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이외의 요인에 의해 주택수요가 진작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양도세 한시적 감면의 미분양 해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공급의 결정요인과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조치 이외의 주택수요의 결정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의 미분양 해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공급의 결정요인과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조치 이외의 주택수요의 결정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양도세 감면의 미분양 해소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본절에서는 양도세 감면의 미분양 해소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1993년 1/4분기에서 2008년 3/4분기의 63분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이다. 먼저, 종속변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 수를 통해 생성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월별 또는 연도별 미분양 누적치 통계 자료를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국토해양부의 미분양 주택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매분기별 미분양 주택 수를 파악한 후 그 차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특히 실증분석 시에는 종속변수를 지역별(전국, 수도권, 지방)로 나눠 분석한다.

한편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이 미분양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1차 감면 기간과 2·3차 감면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를 각각 생성한다. '1차 양도세 감면 더미'는 1998년 3/4분기부터 1999년 2/4분기까지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0의 값을 갖는다. '2차 양도세 감면 더미'는 2000년 4/4분기부터 2002년 4/4분기까지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분기들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양도세 감면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정책 이외에 미분양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분양은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이 많을수록 증가하고, 기존 미분양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본절에서 행하는 미분양 분석의 설명변수들은 신축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명목변수가 아닌 실질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료가 명목변수인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시켰다.

먼저, 주택공급 측면의 설명변수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사용한다⁹⁾. 일반적으로 신축주택의 분양은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한 분기 이전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변수는 매분기 동안 발생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적과 주택건축허가 실적을 나타낸다. 또한 종속변수가 3개 지역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분석 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해당 지역별 실적을 의미한다.

주택수요 측면의 설명변수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지수, 3개월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통화량(M2),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 매매가격지수를 고려한다. 본절의 분석 결과에서는 주택수요 측면의 설명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닌 변수만을 제시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명목변수가 아닌 실질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료가 명목변수인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CD 유통수익률을 제외하고 원변수가 계절조정이 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 X-12-ARIMA 기법을 이용해 계절조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자연대수를 취한 후 분석을 행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수행할 때에 사용되는 시계열 변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을 갖는지의 여부를 ADF(Augmented Dickey-Fuller)방식을 통해 검정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나타내는 변수들만이 수준변수에서 안정적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분양 변수들과 실질 국내총생산 변수는 수준변수에서는 불안정적이지만 1차 차분하면 안정적인 시계열로 드러났다. 아래의 <표 6>은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 자료의 ADF 단위근 검정결과를 보여준다.

9) 신축주택 공급에 관한 문헌에서는 그 결정요인으로 주택건설 비용(임금 및 자재비 등), 분양가,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건설업자의 물가 기대수준, 현존하는 주택 수량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altavull(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6〉 시계열 자료의 ADF 단위근 검정결과

거시경제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미분양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주택건설 인허가: 전국	-3.85***		미분양: 전국	-1.41	-4.04***
주택건설 인허가: 수도권	-4.34***		미분양: 수도권 ¹⁾	-2.91**	-4.25***
주택건설 인허가: 지방	-3.06**		미분양: 지방	-1.47	-4.09***
실질 국내총생산	-3.15	-5.49***	미분양: 중대형	-0.58	-4.81***
			미분양: 국민주택	-1.62	-4.15***

주: 1) 수도권 미분양 변수는 ADF 단위근 검정결과 수준변수에서 5% 유의수준에서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지만, Phillips-Perron 방법 및 자기상관관계를 검토해 보면 수준변수가 불안정 시계열로 판단됨.

1.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회귀분석 모형(classical regression model)은 안정적인 변수들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불안정적인 시계열 변수들에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모두 추세를 가진 불안정적 시계열인 경우 두 변수 간에 완전히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매우 유의적인 회귀계수 및 매우 큰 결정계수(R^2) 값을 얻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분석에서는 불안정적인 시계열인 경우 안정적인 변수로 전환한 다음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¹⁰⁾.

본 분석에서는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정책이 미분양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두 가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단순모형은 설명변수로서 양도세 감면 더미들과 종속변수의 전 분기 변수 및 상수항만을 포함한 경우이다. 두 번째 확장모형은 단순모형에 있는 설명변수들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 변수 및 시간추세¹¹⁾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모형하에서는 2·3차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1차 감면도 전국 미분양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면 오로지 2·3차 감면 정책만이 전국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의 경우 단순모형하에서 1차 양도세 감면 정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방 미분양 감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장모형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단순모형과 확

단순모형하에서는

2·3차 양도세 감면뿐만

아니라 1차 감면도 전국 미분양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면 오로지 2·3차 감면

정책만이 전국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인 시계열 변수들 간에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 벡터오차수정모형(VEC model)을 통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의 주된 변수인 미분양 변수들과 실질 GDP 간에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11) 본 분석에서는 확률적 추세(stochastic trends)뿐만 아니라 확정적 추세들(deterministic trends)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추세 변수를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 미분양의 경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장모형 모두 2·3차 양도세 감면이 유의미하게 수도권 미분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양도세 감면정책의 미분양 해소효과 분석결과

설명변수	d(전국 미분양)		d(수도권 미분양)		d(지방 미분양)	
	(1)	(2)	(3)	(4)	(5)	(6)
d(전기 미분양)	0.45 (4.00)***	0.37 (3.23)***	0.27 (2.14)**	0.22 (1.80)*	0.48 (4.17)***	0.38 (3.21)***
1차 양도세 감면더미	-0.11 (-2.05)**	-0.03 (-0.39)	-0.15 (-1.04)	0.002 (0.01)	-0.09 (-1.74)*	-0.01 (-0.11)
2~3차 양도세 감면더미	-0.09 (-2.18)**	-0.10 (-2.59)**	-0.28 (-2.60)**	-0.33 (-2.92)***	-0.06 (-1.51)	-0.04 (-1.06)
d(실질 GDP)		-0.43 (-0.52)		-5.35 (-2.41)**		0.84 (0.98)
전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0.13 (1.95)*		0.12 (0.84)		0.15 (2.44)**
d(전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0.11 (-1.85)*		0.004 (0.04)		-0.11 (-1.78)*
시간추세		0.001 (1.66)		0.002 (1.03)		0.001 (1.49)**
상수	0.03 (1.90)*	-1.48 (-1.93)*	0.05 (1.28)	-1.22 (-0.79)	0.03 (1.76)*	-1.72 (-2.42)**
조정된 R ²	0.38	0.41	0.22	0.27	0.33	0.36
DW 통계량	2.06	2.04	2.07	2.06	1.97	1.97

주: 1. d는 차분을 의미함
 2. 설명변수 중 d(전기 미분양)은 각 해당 종속변수의 전기 차분변수임을 의미함
 3. () 안은 t값을 나타냄
 4.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냄.

한편 지방 미분양의 경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분기 전의 주택건설 인허가가 100% 상승하면 지방 미분양의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11%p 정도 증가하며, 1분기 전의 주택건설 인허가가 100% 상승하면 지방 미분양의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기의 미분양 증가율은 다음 기의 미분양 증가율을 높임에 따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증가는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지방 미분양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전국 미분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며, 단지 그 효과의 크기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p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수도권 미분양의 증가율은 5%p 감소하며, 이는 시차를 두고 계속하여 다음 분기의 미분양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미분양 주택의 적체 문제가 수도권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가계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미분양 대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기침체 속에서 주택 미분양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주택 미분양 문제가 수도권까지 확산됨에 따라 주택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작금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방에 한정하여 제공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주택수요를 촉진하여 미분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은 과거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서울의 고급주거단지에서 많이 누림에 따라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최근 2월 국회 기획재정경제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정책이 또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외환위기 직후 1차 양도세 감면 기간 동안 전체 미분양 물량의 28% 정도인 30,289호가 감소한 것은 주택건설 인허가 감소에 따른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3차 양도세 감면은 전체 미분양, 특히 수도권 미분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3차 양도세 감면 정책의 경우 지방 미분양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의 한시적 양도세 감면 정책의 효과에 관한 본고의 분석결과는 향후 재도입될 예정인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는 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택 및 건설시장의 몰락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정책당국의 입장

과거의 한시적 양도세 감면 정책의 효과에 관한 본고의 분석결과는 향후 재도입될 예정인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는 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미분양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계를 지닌 정부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분양가 인하 등 주택사업자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는 동원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정책수단이 당장 가시적으로 큰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계적인 효과(marginal effect)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의 시장상황에서는 전향적으로 그 정책수단을 한시적·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혜택이 있는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주택 미분양 문제의 완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미분양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계를 지닌 정부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분양가 인하 등 주택사업자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IF

<참고문헌>

국세청, 『2008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08.
 김덕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8.
 김현아, 「최근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건설산업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박명호·우석진, 『양도소득세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차문중, 「주택가격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Taltavull, P., “Housing Supply and Prices: Revisiting the Theory”, mimeo, 2007.
 Thomas, R. L., *Modern Econometrics: an Introduction*, Addison-Wesley, 1997.

<부표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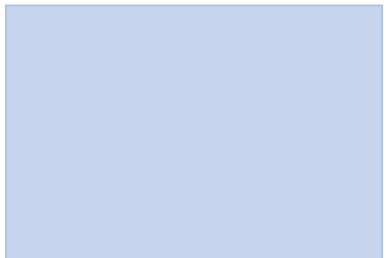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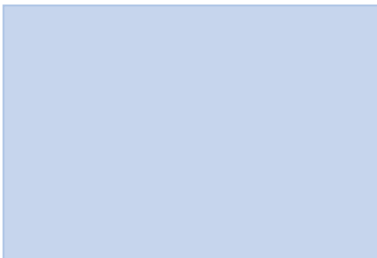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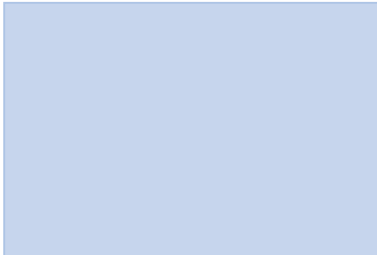
구분	1차 양도세 감면	2·3차 양도세 감면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감면대상자	거주자 (주택건설업자 제외)		
감면요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사용승인)하고 취득하여 양도		
감면율	- 5년 이내 양도 ⇒ 100% 감면 - 5년 경과 양도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		
대상주택	신축주택 취득기간	- '98. 05. 22 ~ '99. 06. 30 : 모든 주택 - '99. 07. 01 ~ '99. 12. 31 : 국민주택	- '00. 11. 01 ~ '01. 12. 31 :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 - '01. 05. 23 ~ '02. 12. 31 : 전국 의 모든 주택 - '03. 01. 1 ~ '03. 06. 30 : 서울 과천 5대 시도시지역 제외한 전 국 모든주택
	자가건설주택, 조합원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 인 등을 받은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 인 등을 받은 주택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한 미입주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납부한 미 입주주택
	감면제외	-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 -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매매계약 후 분양권 상태로 양도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02. 12. 31 이전은 고급주택)인 경우 등은 감 면 제외	
적용시기	- '99. 07. 01 ~ '99. 12. 31 기간 중의 국민주택 ⇒ '99. 07. 01 양도분부터 적용	- '00. 11. 01 ~ '01. 12. 31 비수 도권 국민주택 ⇒ '01. 0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01. 05. 23 ~ '03. 06. 30 전국 모든 주택(단, 서울, 과천, 5대 시도시는 '02. 12. 31까지) ⇒ '01. 8.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고	-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 가능 - 감면주택에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함 -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과세 -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 국세청, 『2008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08, pp. 41~42.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17개 국책연구원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정포럼』에서는 지난 3월 10일~11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본원이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의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 재정 정책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 악화되는 경제상황

2008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실물경제 침체는 향후 적어도 1년 이상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초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로 수정한 바 있다.

실물경제의 침체는 주요 경제부문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투자를 보면, 2008년 4/4분기에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16.8%,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39.5%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2008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로, 2007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도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 4/4분기에 민간소비 증가율은 -4.4%이었고, 내구재소비 증가율은 -10.3%이었다.

고용률은 59.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5년 4/4분기 이후 최대폭(-0.6%p)으로 하락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08년 취업자 수가 408.4만명으로 전년 대비 11.8만명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 졸업생들의 취업난 심화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표 1〉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기관명	2009				2010	
		최근		종전		최근	
		전망치	일자	전망치	일자	전망치	일자
국내	산업연구원	3.2	(08.12.1)	3.5	(08.11.21)	-	-
	한국은행	2.0	(08.12.12)	-	-	4	(08.12.11)
	LG연구원	1.8	(08.12.26)	3.6	(08.10.14)	-	-
	금융연구원	1.7	(08.1.8)	3.4	(08.10.29)	-	-
	KDI	0.7	(09.1.21)	3.3	(08.11.12)	-	-
	삼성연구원	-2.4	(09.2.11)	3.2	(08.11.27)		
해외	ADB	4.5	(08.9.16)	-	-	-	-
	OECD	2.7	(08.11.25)	5	(08.6.4)	4.2	(08.11.25)
	JP 모건	-2.5	(09.1.4)	1.5	(08.12.18)	4.1	(09.1.4)
	메릴린치	-0.2	(09.1.23)	-0.2	(08.12.21)	3.5	(09.1.23)
	Citigroup	-1.8	(09.1.23)	2	(08.12.23)	3.6	(09.1.23)
	모건스탠리	-2.8	(09.1.23)	2.7	(08.12.26)	3.8	(09.1.23)
	BNP Paribas	-4.5	(09.1.23)	4.7	(08.10.24)	3.2	(09.1.23)
	골드만삭스	-1	(09.1.27)	1.8	(08.12.10)	3	(09.1.27)
	IMF	-4	(09.1.29)	2	(08.11)	4.2	(09.2)

2.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재정 여건

1) 통화 · 금융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발생

정책금리의 지속적 인하 및 원화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는 하락하지 않아, 국고채 금리와 위험자산인 회사채 금리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회사채 중에서도 우량기업(AA 등급)과 위험 기업(BBB 등급)간 금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회사채프리미엄은 2007년 12월 1.03%에서 2008년 12월에는 4.31%로 확대되었다. 신용경색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등 이자율 인하 및 정부신용보증 확대와 같은 통화 · 금융정책의 총수요관리 정책이 충분한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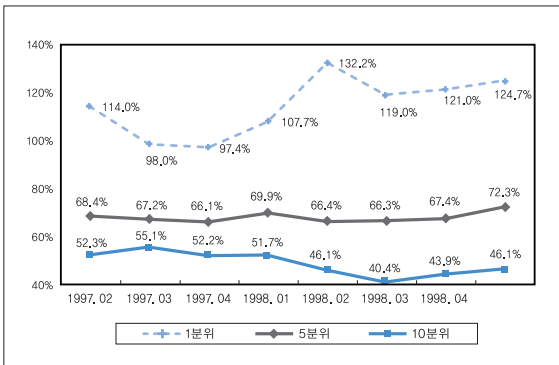


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중·고소득층 소비 위축, 저소득층 소득 악화」 극복 문제 재현

1997년의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경험을 보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훨씬 큰 폭으로 소득이 감소하였다.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미미하였던 반면, 중간소득계층(5분위)의 경우 약 20% 감소하였고, 최저소득계층에서는 30% 정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에서는 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중이 상승하여 가계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중·고소득층은 소득 저하보다도 더 큰 폭으로 소비가 감축된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1] 1997~1998 외환위기 당시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추이



최근의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및 평균소비도 그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소득 1~2분위) 가구에서는 소득증가율이 둔화되어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고소득층(9~10분위) 가구에서는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3) 재정적자 확대 및 중·장기적 시계의 불확실성 확대

■ 세입감소

2009년 국세수입예산은 당초(2008년 10월)에 179,6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성장률 전망에 따른 하향조정(-1,9조원) 및 추가 감세정책(-2,3조원) 등으로 인해 2008년 12월에는 당초보다 4.2조원 감소한 175,4조원으로 확정되었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2.5%로 낮아졌고, 2009년 경제성장률도 -2%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2009년 국세수입은 2008년 12월에 확정된 것보다 추가적으로 약 11조원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감소 추이가 뚜렷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는 시차를 두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출증가

2008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추경 편성(5.6조원) 및 교부금 정산(5.4조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0조원 증가할 것이다. 2007년의 세계잉여금이 16.5조원이며, 이 중 4.9조원이 국가채무상환에 사용되고, 11.0조원이 2008년 추경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된다.

2009년 수정예산상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예산안(246.9조원) 대비 10.6조원 증가하였다. 수정예산에 성장률 1%p 제고 및 취업자 7만~8만명 증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정예산 이후에, 「녹색뉴딜 사업(2009~2012년)」추진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소요도 있다. 녹색뉴딜 사업에서는 9개 핵심사업, 27개 연계사업에 2009~2012년간 총 50조원의 지출소요가 있는데, 이 중 2009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추가 재원규모는 약 1,9조원 정도 된다.

■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2008년 관리대상수지는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7조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및 교부금 정산(11조원)으로 인해 당초 GDP 대비 1.1% 적자보다 확대된 2.3%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수정예산 기준으로 -24.8조원, GDP 대비 비중으로는 2.4%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당초 예산(10.4조원; GDP 대비 1.0%)보다 14.4조원(GDP 대비 1.4%p)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녹색뉴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 및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2%로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를 반영할 경우,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수정예산에서보다 13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4%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7년말 32.7%에서 2008년말에는 32.3%로 소폭 감소하겠지만, 수정예산에서는 34.5%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을 하락 및 추경편성 등으로 세출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장기적 국가채무 수준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부터 감세정책에 따른 세입감소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상황 악화·단기 정책확대 정책의 고착화가 발생할 경우 중장기적 국가채무 수준의 심각한 악화도 배제할 수 없다.

3.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는 필요한가?

1) 경제상황의 심각성

2009년 예산이 확정된 2008년 12월에 비해 국내 및 세계 경제 전망이 급격히 하향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경제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20세기 초반의 경제공황과 비교되고 있고, 최근 IMF 총재(Strauss Kahn)는 선진국 경제가 이미 공황(depression)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할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Bloomberg, 09. 02. 08)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09년에 접어들면서 경제위기 악화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 재정 역할 증대의 불가피성

유동성 공급의 확대, 정책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등 총수요관리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통화·금융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97~1998년 금융위기의 경우 대외 수출의 확대 및 소비자 신용확대와 같은 시장에서의 총수요 증대정책이 실효성을 가졌으나 현재는 이러한 정책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주식시장 및 주택시장에서의 자산가치의 빠른 상승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총수요 관리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물부문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세·재정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의 경우, 고용 및 소비 진작·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규모는 국가별 충격 정도와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진원지인 미국과 오랜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에서는 정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표 2〉 각국의 경기활성화¹⁾ 정책의 규모('08.10월 이후)

(단위: 10억 자국통화, %)

	총규모	기간	2009년 지출	GDP 비중
미국	1,007	'09~'19	341.8	2.3
영국	13.3	'08/09~'11/12	16.3 ²⁾	1.1
일본	36,900	'09~'11	12,300 ²⁾	2.4
독일	81	'09~'10	40.5 ²⁾	1.6

주: 1) 금융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제외
2)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 지출규모임.

3)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

물론 총수요 관리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확대가 총수요(소비·투자)를 충분히 증대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적절한 사업선택과 함께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는 물가인상과 관련된 것인데, 2008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이므로, 현재로서는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국가채무의 증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공황을 맞게 될 정도로 세계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국가채무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국가채무 수준이 일정 수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확대시키는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기적인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입 중립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선택의 기준과 재정확대 규모는?

1) 정책 선택의 기준

IMF, Brookings Institute, CBPP(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등이 권고하는 경제위기기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3T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Timely(적시성): 재정정책의 시차효과를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르게 정책을 집행
- ② Targeted(집중성): 재정정책의 총수요 증대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 재정정책을 집중
- ③ Temporary(일시성): 단기적 재정충격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 재정정책의 명확화

이밖에 IMF는 지속성(불경기 지속 가능성 대비), 다각성(분야별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신축성(필요시 추가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건들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좀 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와 중기계획상 조기 집행(front-loading)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지출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 즉 고착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정책선택의 수립이 확립되면 정책적 목적과 수단의 연계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2) 재정확대 규모

■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작년말 확정 예산에서 2009년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25.6조원(재량적 정책 규모는 23.7조원; GDP 대비 2.3%)이고, 경제성장률 개선효과는 약 1.5%p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는 감세

(13.0조원) 효과 0.49%p, 지출확대(10.7조원) 효과 0.58%p, 재정조기집행(상반기 60%) 효과 0.48%p 정도로 추정된다.

〈표 3〉 2009년 재정정책 규모

(단위: %)

구분	세입		세출		재정수지(국가채무)	
기추진	감세정책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13.0조원	수정예산안의 지출증가	10.0조원	당초예산	-1.0% (32.3%)
	성장을 저하(5 → 4%)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1.9조원	수정예산 국회 승인시 증액	0.7조원	수정예산	-2.4% (34.5%)
소개	14.9조원		10.7조원		25.6조원	
추정	성장을 추가 하락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약11조원	녹색뉴딜사업 추정편성	1.9조원+a		-4% 약13조원 악화
합계	약 26조원		약 13조원+a		약 39조원+a	

주: 음영 부분은 재량적 정책임.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재량적 정책 규모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2.3%이고, IMF가 추정 한 G-20 국가들의 2009년 평균 규모는 1.5%(공적자금 포함)이므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 추진한 감세정책을 제외할 경우 재량적 정책규모는 10.7조원(GDP 대비 1%) 정도이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재량적 정책규모와 외국 수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전년 대비 2009년 재정수지 악화 추이를 보면, G-20 국가들은 평균 GDP 대비 약 3.5%p 정도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할 경우 세수감소 11조원을 포함하여 적자규모가 38조원(GDP 대비 약 4%)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수준은 전년 대

비 2%p 정도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기대책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상황 전개에 대응하여 기존 대책에 추가하여 경기부양책을 수립하였거나 수립하고 있다. IMF가 권고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재정책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Financial Times도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내수진작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 단기적 재정정책과 중장기 재정정책의 구분

경제위기 이전에 추진한 감세정책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기추진된 감세정책은 본질적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한 재정정책이다. 즉 기존의 감세정책은 조세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왜곡효과를 주이고 민간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세수증가의 선순환을 통하여 재정여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시각에서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정책과 기추진된 감세정책의 중장기적 정책효과는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적정규모의 시산

해외수출의 증가세는 세계경기 회복을 필요로 하므로 우리 정부의 정책수단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외생변수라 할 수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투자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인위적 투자 촉진에 한계가 있다. 결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63.5%, 2008년) 다음으로 높은 민간소비(48.4%)의 둔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09년 경제성장률이 -2%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이 중 절반 정도를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상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1%p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를 얻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다. 이에 필요한 재정확대 규모는 정책수단 및 방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성장제고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고, SOC투자 등에 상당부분이 집중되는 경우의 재정소요는 약 8조~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 혹은 정부소비의 직접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의 지출소요는 약 8조~2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혹은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3%보다 5%p 하락하였으므로,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제고 효과의 목표를 위에서 언급한 1%p보다 더 높이 설정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소요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

5. 종합적 기준을 고려한 정책 대안

실물경기 활성화 정책은 가계지원, 기업지원, 고용 창출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계지원정책은 조세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계부문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과 세 부담 인하를 통해 기업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고용창출 정책은 실업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취업 지원, 해고근로자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재정확대 정책의 3T 원칙, 외국의 경제위기 대응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간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획 또는 시행하고 있

다. 특히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각종 수당 및 보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은 특정계층으로 한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증산층 지원 Tax Credit, 독일의 소득세 낮은 세율 인하, 일본의 생활지원정책급부금, 프랑스의 사회보장급여 추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개발도상국인 대만, 중국 등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및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공공투자 규모가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 규모가 대체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외국 정책사례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부분 정책들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추가 보조금 지급 및 세율인하 조치는 대체적으로 1~2년 기간으로 적용한다. 영국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율인상 등 명시적인 재정보호 방안을 부양조치와 함께 명시하고 있다. 독일도 헌법개정을 통하여 향후 정상적 경기상황에서 연방, 주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순채무를 최고 GDP의 0.5%로 제한할 예정('09. 1월 발표)이다.

1) 소비진작과 소득보전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계지원 정책은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조세정책 및 지출정책으로 구성된다. 지출정책에는 즉각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수당 증액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있다. 가계지원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유자녀 가구 포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의 오바마 정부 '09 경기활성화 법안의 소득세 감세 조치는 중산층(\$200,000 이하)에 적용된다. 영국의 정책에는 연금수령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자녀양육비 보조금 조기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유자녀 가구 지원 강화, 낮은 소득세율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에 추가 지원 등 한시적 지원정책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소비진작이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전후방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및 '음식점 및 숙박업' 관련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동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시적인 면제 등 자동차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은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락서비스업 및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소비·소득지원 쿠폰(상품권)」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지급대상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이전지출 확대 방안은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이전지출을 시행할지는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을 지원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이전지출을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은 상당 부분이 부채 탕감 등으로 누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소비진작도 중요한 정책목표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면,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까지를 이전지출의 수혜계층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지출 확대를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시행한 유가환급금과 유사한 현금성 이전지출, 또는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한 것과 유사한 상품권 지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의 정책효과는 지급되는 상품권의 사용 및 현금화에 대해 어떤 제약이 설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품권의 사용기한, 사용목적, 현금화 등에 대한 제한이 강하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진작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상품권을 지급받는 대상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을,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지출 확대는 2008년에 시행한 「유가환급금」과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지만, 지급대상 등에 있어서는 유가환급금의 경우와는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유류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2009년의 경제상황에서 시행할 「상품권」 혹은 「현금이전지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소비진작의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자영업자)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유가환급금의 경우와는 달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 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액 및 재원소요는 전반적인 재정지출 확대규모 및 다른 정책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약 3조~5조원 정도의 이전지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내구재 소비 세제지원

자동차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자동차 전체로 하거나, 혹은 일정 수준 이하의 배기량을 가지는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약 0.9조원, 2,000cc 이하 자동차만으로 한정할 때에는 약 0.4조원에 해당되는 재정확대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1년간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 자동차 교체시에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제의 적용에 있어 연비 등에 대한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내수진작과 친환경성 제고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취·등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분을 중앙정부가 이전재원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내수진작과 미래성장동력과의 연계는 장단기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다.

기업의 컴퓨터 구매시 즉시상각을 1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컴퓨터 대체수요를 촉진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가진다.

■ 문화 관광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연극, 음악회, 관광 등 문화레저 부문 소비촉진을 위해 연간 100만원 한도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공연 입장·관광 등에 소비에 대해 2009~2010년 기간 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지출대상은 연극, 음악회,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함께 콘도 등 숙박시설의 숙박료, 놀이공원의 입장료 등에 국한하는 정도가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국내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고용 및 투자 지원 강화

외국에서도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유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 세부담 감면 혹은 이연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규시설투자에 대한 즉시상각 혹은 가속상각의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율 인하,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그 중 하나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그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09년 민주당법안(하원통과)에서 제외되었다.

■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고용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업급여 기여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의 연간수입 중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한 수입은 기존에 비해 약 50%, 금액으로는 1.2조원 정도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기금이 연간 지출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실업급여, 건강보험료)

실업급여의 추가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실업자에 대해 6개월 이상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기본 지급기간이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추가지급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5개월까지만 지급된다. 따라서 추가지급기간의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총지급기간이 5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되도록 할 수 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도 실직 후 지역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방안은 실직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하여 경감된 보험료도 정부가 대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984억~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최근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약 3조원 수준의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업종 및 지역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목적이 경기조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종 및 지역 등에 대한 제한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투자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현재 실업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차별하여 적용하는 것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완화 및 철폐

폐함으로써 불황기에도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수도권 기업 및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신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또는 비용화

신규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상당 비율을 투자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신규투자의 자본비용을 줄임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당해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비용화(immediate expensing)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없앴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며, 소비세 방식으로의 조세개혁 방안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3) 공공투자 확대

공공투자 확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응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던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의 외국 사례를 보면, 모든 국가들에서 공공투자 사업이 경기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투자 규모가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이는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공공투자 확대의 효과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개발도상국(중국, 대만)은 SOC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에너지 등 각종 사회시스템 개선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성이 높은 공공투자를 발굴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경기활성화 측



면에서의 효과성만이 아니라, 재정지출 자체에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SOC 사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front-loading)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투자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바, 이를 조기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상하수도 개선공사 조기 시행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하수도 개선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하수도 개선의 경우 ① 공사 규모가 상당히 커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고, ② 중장기적으로 재정 중립적이면서, ③ 먹는 물과 수질개선이라는 녹색 성장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고, 예산낭비에 대한 논란이 없으며, 집중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출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예산이 4대강 정비 등 SOC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편성된 현 상황에서 SOC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처럼 중장기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녹색성장 사업 조기 시행

이와 더불어 녹색성장 사업의 조기시행 비중의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09~12년)」에는 녹색성장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는 '09~'12년간 총 50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리고 '09~'12년간 총 46조원의 추

<부록> 주요국의 조세 · 재정정책 동향

■ 가계지원 정책

	한시적 정책	항구적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환급: \$600~\$1,200 ('08) -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500~\$1,000 ('09 하원통과) - 실업수당 일시적 인상(\$25/주) - 긴급실업보상금 기간 확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율 인하: 17.5%~15% ('08~'09) - 연금수령자 보조금지급('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 보조금인상 조기적용('09 4월 → 1월) - 소득세 기본공제액 추가인상('09) - 저소득층 세금환급금 영구화('09)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너스지급: 100유로/아동('09) - 신규등록 자동차세 면제: 1~2년 - 고용보험료 인하: 3.3~2.8%('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소득세율 인하: 15% → 14%('09) - 아동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인상('09)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증액('09) - 의료보험료 인하('09)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료 인하: 1.5~1.1%('09) - 생활지원정액급부금: 2조엔('09) - 상장주식 배당 및 양도소득 10% 경감세율 적용('09~'11) - 자동차 중량세 감면('09~'12) - 주택차입금 특별공제 연장('08~'13) - 해고 파견근로자 주택제공시 고용주 지원('0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고용보험 혜택 확대(1년 → 6월 이상 고용)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지급: NT\$829억('09. 1~2) - 국외소득 최저한세 과세연기('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검토

■ 고용유지 및 창출 정책

	한시적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록 전산망 구축, 과학연구시설 지원 등: \$360억('09 하원 통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지출조기집행: '10~'11 → '08~'10 (GBP 30억; Pre-Budget Report 2008) - 실업자 재취업지원(GBP 13억), 국가고용파트너십 제도 지원 등을 강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보수 · 투자: 10억유로('08.11월 발표) - 지방정부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원금 증액: 30억유로 - 연방-주정부 합동프로그램: 2억유로 - 건물 효율화, 자동차 기술개발 투자지원: 135억유로 - 학교, 도로, 병원시설 개선: 33억유로 추가(총 173억) - 고용보험료 인하: 3.3 → 2.8%('09~'10)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대책: 500억엔('08~'09)('08 추경, 세제개편안) · 파견 근로자 고용시 고용주 지원 등 - 지방공공단체의 일시적 고용지원: 4,000억엔('08~'09) - 고용보험료 인하: 1.5 → 1.1%('09)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지하철, 하수도 등 기반시설건설: NTD4,000억('08. 11월 발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인프라, 에너지서비스 현대화, 주택 등) 투자: 123억유로('08.12월 발표) - 10인 이하 고용기업의 2009년 신규고용시 최저임금의 1.6배까지 세제지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건설: 18조위안('08. 11월 발표)



■ 기업활동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투자자산에 대한 즉시상각/가속상각 허용 ('08 시행) - (소기업) 가속상각법 적용기한 2년 연장 ('09 하원통과) - (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2년 → 5년 ('09 하원통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수출기업 자금지원: GBP 10억 (Pre-Budget Report 2008) -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1년 → 3년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 연기: 21 → 22% - 해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 (검토)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별대출: 150억유로 ('08.11월 발표) - 중소기업 R&D 자금지원(연 4.5억유로): '09~'10 - 미래형자동차 엔진개발 지원(5억유로): '09~'10 -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달(70억유로): '09~'10 - 중소기업 특별상각제도 2년 연장: '09~'10 - 동산에 대한 25% 정률 상각 허용: '09~'10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수급구조개혁 설비투자 즉시상각: '09~'11 ('08. 12월 발표) - 자원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특별상각: '09~'12 - 중소기업 경감세율 인하(22% → 18%): '09~'10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용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상: 1,000유로 ('08. 12월 발표) - 자동차 금융회사에 크레딧 라인제공: 10억유로 -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펀드 설립: 3억유로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 연장: 5년 → 10년 ('09 1월 의회 통과)

Report

정책토론투리포트



■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 본 원고는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9년 2월 27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 일 시 2009년 2월 27일(금) 14:00~16: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4:00~14:1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0~15:4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 발 표 자 신영욱 부즈&컴퍼니 부사장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 ▶ 토 론 자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 준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대희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전오 한국세무학회 회장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15:4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00 폐회

(가나다 순)

주제발표 요약

신영욱/부즈&컴퍼니 부사장

- 주요 해외 국세행정 기관들의 개혁 프로그램 사례
 - ▶ 호주 ATO, 영국 HMRC, 미국 IRS와 같이, 조직, 기능, 프로세스, 시스템, 인사 등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선진 해외 국세행정 기관들을 중심으로 기능별 우수 사례 및 개혁 경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호주 ATO	영국 HMRC	미국 IRS
프로그램명	■ ECMP - Easier, Cheaper, More Personalized	■ Transformation Programme	■ Modernization ■ TAB 및 IT MV&S
추진배경	■ 세제 개혁 이후 세정 개혁 실패 ■ 납세자들의 불만 ■ ATO에 대한 낮은 신뢰도	■ 대국민 서비스를 강조하는 '정부 개혁전략' 발표	■ 납세자 불만 ■ 구시대적인 운영모델과 감독 시스템
추진동력	■ 언론 비판에 따른 조직 진단	■ 행정기관의 조직 진단	■ 입법기관의 조직 진단 ■ 개혁법안
추진방향	■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분석력 강화 ■ 인터넷 채널 비중 확대 ■ 신규 서비스 개발 ■ 프로세스 개선 및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 조직 구조 변경 ■ 직원 교육 강화 ■ IT 현대화	■ 납세협력비용 절감 ■ 인터넷 채널 사용 증대 ■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 조직구조 개편	1차 ■ '고객 중심' 운영모델 ■ 납세자 유형 조직구조 ■ 외부 감독기능 강화 ■ 공공단 개혁 ■ 양적 성과 지표 탈피 ■ IT 인프라 현대화 2차 ■ 납세서비스 개선 ■ 조사기능 강화 ■ 조직역량 현대화
추진 방법	■ 3단계에 걸쳐 진행 ■ 변화감동위원회 수립	■ 5개년 계획 수립 ■ 감독위원회 수립 ■ '개혁부' 감독	■ 2차에 걸친 5개년 프로그램 ■ 이사회 및 외부 감사실 신설
예산	■ \$4.5억호주달러 (약 4,100억원)	■ 27억파운드 (약 5조 300억원)	■ \$80억달러 (약 8조 7천억원)
성과	■ 고객 만족도 향상 ■ 직원 만족도 향상	■ 115억파운드의 기대효과 예상 ■ 2008년 24억파운드 달성	■ 고객 만족도 향상 ■ 직원 만족도 향상 ■ 업무량 감소

- 해외 국세행정 기관들의 주요 개혁 부문
 - ▶ 해외 세무행정 사례 연구를 통해 다음 부문에 대한 개혁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됨

• 비전 및 전략

- 조직의 비전 및 미션을 효율성, 효과성, 고객서비스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조직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가능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

- 예를 들어, IRS는 99년 개혁 당시 변화의 첫 단계로써, 공급자 중심의 단순 징수 의무를 강조한 기존의 미션을, 납세자 지향의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여, 기존 조직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을 혁신하였음

- ▶ 98년까지 IRS의 미션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Collect the proper amount of taxes due from individual taxpayers and businesses)" 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IRS는 세수 확보 및 탈세 방지만을 중점적으로 추구해 왔음. 99년 "미국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납세자에 대해 공정하고 성심을 다해 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Provide America's taxpayers top quality service by helping them understand and meet their tax responsibilities and by applying the tax law with integrity and fairness to all)" 하는 것으로 미션을 바꿈

- 이러한 새로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IRS는 개별 납세자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모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생산성 증가라는 전략 목표를 정립하고 추진하여, 내부 직원 만족도는 물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킴

• 리더십

- 호주 ATO, 영국 HMRC, 미국 IRS 모두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조직 리더들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미국 IRS의 경우, IT, 마케팅 등 지원 기능 외에도, 납세자 유형별 운영조직의 총책임자 등 세정 고유 기능 관련 핵심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리더들의 인적 구성 변화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였음
- 유능한 민간 전문가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년 계약제로 신분을 보장하고 미국 부통령 임금 수준까지 법 개정을 통해 제시하는 한편, 리더십 직급에 대한 내외부 경쟁체제 도입, 성과 및 리더십 역량 중심의 평가 보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킴
- 또한, 경영능력, 직원 및 고객 만족, 전략적 사고, 도덕성 등을 포함하는 리더십 역량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개발 톨(예: 코칭, 개발 과제 부여, 대외 교류 등)을 활용한 리더십 직급별 맞춤 교육 및 승급 후보자 대상 준비 과정 등을 통해 리더십 교육에 크게 투자함

• 지식 관리 (고객 이해)

- 호주 ATO의 경우, 모든 납세자에게 획일적인 세정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1) 납세자들의 니즈에 대해 과소 또는 과잉 서비스 제공, 2)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비의도적 납세 비순응을 추적하는 데 많은 비용 지출, 3) 우편, 전

- 화, 방문의 제한적인 채널 제공으로 고객 불만 및 내부 업무량 증대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음
- 호주 ATO는 달성하고자 하는 To-Be 운영 모델을 납세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납세자 탈세 리스크 수준별 조사 수행 등 차별화된 세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립하고, 이를 위해 납세자 이해가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임을 강조함
- 납세서비스 및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지식'을 배양할 목적으로, 미국 IRS, 영국 HMRC 등 선진 해외 기관은 대표적으로 1) 고객 정보 수집 및 고객 세분화(Segmentation: 납세자를 서로 다른 니즈, 성향, 납세 행동 및 의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수집), 2) 리스크 Profiling(데이터의 모델링을 통해 각 고객군의 납세 비순응 리스크를 점수화함) 등 납세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활동을 수행함

• 채널 전략

- 캐나다 CRA, 미국 IRS, 영국 HMRC, 호주 ATO 등 해외 국세행정 기관들은 비용 효율성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멀티 채널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세무행정 기관의 서비스 채널 선호 순서를 온라인 → 전화 → 이메일 → 서신 → 대면 채널(가장 비선호)의 순서로 두고, 궁극적으로는 고객 셀프서비스 등의 강화를 통해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무기관과 고객 둘 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노르웨이 NRA의 경우, 채널별로 Traffic Volume(이용량)과 건당 처리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대면, 우편 등 고비용 채널의 Traffic을 줄이는 대신 저비용 채널인 온라인 채널 등으

로 고객을 유도(Traffic Migration)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해외 국세행정 기관들은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통해 1차 채널인 온라인 채널로 고객을 유도하고, 예약제 운영 및 안내자(Floorwalker) 제도, 대면 채널 센터 내의 셀프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채널인 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의 니즈 해결과 세무서 업무량 감소 및 채널 운영 효율성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영국 HMRC의 대면채널 안내자(Floorwalker) 제도: 고객의 Enquiry Center 방문시, 안내자가 일차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단순 처리 업무는 신속히 지원하며, 단순 처리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국세기관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무료 전화 서비스로 안내하거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컴퓨터 터미널로 안내함

- IT 시스템 투자
- 호주 ATO, 영국 HMRC, 캐나다 CRA, 미국 IRS, 노르웨이 NRA, 네덜란드 NTCA 등 OECD 국세행정 기관들은, 고객 서비스 개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IT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실시함
- 이러한 투자를 통해 대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역량, 자료 관리 및 분석 기능, 내외부 보고 기능, 보안, 인력 관리 등의 지원 기능 향상을 가능하게 함
- 미국 IRS의 경우, 1999년 개혁을 시작한 이래, 10~15년간 장기 계획 및 총 80억달러 투자 규모의 IT 시스템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조직 및 거버넌스
- 해외 국세행정 기관들은 최초의 모델인 세목

- 별 조직에서, 기능별·납세자 유형별 조직의 특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OECD국가의 대부분(4/5)이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구조인 대규모 납세자 조직(LTO, Large Taxpayer Office)은 기능별/납세자 유형의 Hybrid 구조로서, 대규모 납세자를 위한 다기능 부서임
- 다양한 사업 활동으로 인한 복잡한 세법 해석 문제 증가, 국외 거래 활동 및 복잡한 자금 조달 방법 증가 등 대형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징세 업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 역량 확보, 대형 납세자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대형 납세자의 납세준용 및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을 가짐. 미국 IRS, 호주 ATO 등이 이러한 조직 구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 유형별로 상이한 니즈, 특징, 납세 준용도 및 미납 위험도를 내포하기 때문에, 납세자 유형별로 적합한 제도 및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납세자 유형별 조직 또한 최근 조직구조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 IRS, 호주 ATO, 캐나다 CRA, 영국 HMRC 등 선진 국세행정 기관들은 국세행정 선진화와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IRS는 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 개혁 법안을 통해 재무부 산하에 세무행정 전담 이사회인 Oversight Board를 두고, 경영, 경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다수 포함하여 IRS의 전략 및 운영상의 의사결정 사항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 세무 행정 전담 감사 감찰 조직으로 재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세무감찰관(TIGTA: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을 두어 세무행정 조직의 비위 예방 및 투명성 개선 노력을 강화하였음

• 변화관리

- 다수의 개혁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규모 및 범위 면에서 방대한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해외 기관들은 변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기능 및 책임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 ATO의 경우, 납세 서비스 강화를 위한 ECMP(Easier, Cheaper, & More Personalized) 개혁 프로그램의 실행 및 변화관리와 IT 향상을 위한 별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차장급이 이를 총괄하고 있음
- 호주 ATO의 변화 프로그램은 정책, 납세순응, 행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와 규모의 프로젝트를 다수 포함하므로, 명확한 프로젝트 스폰서 및 책임자, 보고라인, 강한 거버넌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 행정 기관들의 개혁 사례 연구 시사점

▶ 세무행정 개혁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비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과 측정이 가능한 전략 계획의 수립 등 내부 경영 이슈에 대하여, 전략적인 경영자 시각과 전문적 접근이 요구됨. 또한, 혁신을 주도하고 조직원들이 변

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 리더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역량이 중요함

- 서비스 및 전문적인 납세순응 업무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객이 어떠한 니즈와 특징, 납세 비순응 리스크 및 비순응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에 대한 분석 및 지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조직의 개선점과 개혁 방향성을 도출하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조직에 대한 외부 시각에서의 객관적인 진단은 물론,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충실한 상호작용 및 적극적인 관여가 핵심 성공 요인임
- 채널 서비스 제공, 조사 대상 선정 등 업무 방식에 ROI 개념을 도입하여, 국세행정의 비용 효율성 강화에 노력함
- IT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내부의 업무량 축소 및 업무 효율성을 추구함
- 외부 인사를 포함한 세무행정 기관 이사회 등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전략적 조언 및 감독을 수행하며, 상세한 성과 공개 및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을 강화함


토론 요약

성공적인 조세행정 개혁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와와의 조화로운 개혁이 필요

김성태/청주대 교수

오늘 발표 자료가 선진국의 국세행정을 잘 정리하였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외국의 국세행정 개혁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시사점도 정리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본인이 생각한 선진국의 국세행정 개혁의 요체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징세기관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조세행정 전반에 걸쳐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셋째, 각국의 조세행정과 관련해서 통계·분석을 강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조세행정 개혁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립해야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전반적으로 조세행정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조세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도록 외부감독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조세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징세기관의 책무성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fairness)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세행정 개혁의 원칙하에 구체적인 개혁 실천방안(action plan)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행정 개혁이라는 것은 조세제도와 분리할 수 없으며 조세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조화로운 개혁이 동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세제의 간

소화, 단순화(세목의 간소화, 세율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조세행정 개혁의 선결요건으로 세목 축소 및 세율 체계 간소화 등 조세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징세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조세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다. 따라서 성실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동기유인제도(incentive compatible scheme)의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사범에 관대하므로 조세포탈범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들도 여러 관점에서 납세자들에 대한 성향분석과 유형 분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납세자들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개혁사례에서 자국 내 평가를 보완해야

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해외 국세행정 개혁 사례 연구”라는 본 심포지엄의 주제는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마련하는 데 많은 나라들이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 속에서 주요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오늘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행 국세행정의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본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 후에, 본 연구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국세행정을 개편 또는 개혁하였고, 세계의 세무행정을 선도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국가들인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이들 나라들의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및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개혁 내용을 ① 비전 및 전략, ② 리더십, ③ 지식관리, ④ 납세자와의 소통(채널)방식, ⑤ IT 시스템 개선, ⑥ 조직 및 거버넌스, ⑦ 변화 관리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시사점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연구를 마감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세제 및 세무행정 담당기관들도 세계적인 세정흐름과 함께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분야인 7가지 분야 중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이 앞서가는 분야와 부족한 분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강한 분야는 간략히 언급하고 부족한 분야에 강조를 두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주요국의 개혁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평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성공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부분은 무엇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반영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1999년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한 후 세원관리의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본인이 미국 국세청 직원 및 호주의 국세행정 분야 전문가와의 면담을 한 결과 상당한 직급의 세무공무원도 자신들의 조직체계 전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개혁 이후 국세행정의 조직구조가 너무 복잡해져서 내부 직원조차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의 의도와는 달리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자국 내의 지적은 무

엇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국세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제기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 경선 시절에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등을 고려한 바 있다. 이처럼 국세청의 독립성 강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경험을 소개해 주면 좋을 것이다.

넷째, 어느 조직이든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협조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원활하게 개혁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승진, 부의 축적 등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도 개혁에 대한 내부 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정직성 고취 등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을 텐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경험에 대하여 소개해 준다면 우리나라 국세행정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조직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요국의 개혁 전 조직체계와 개혁 후 현재의 조직체계를 본청의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구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는 주요국 국세행정의 전체 조직체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조직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행정 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국세행정 개혁모델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한다. 조세행정에서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재정수입 확보 방안, 둘째,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갈등해소 방안, 셋째, 징세비용의 관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조세행정은 입법을 담당하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국정운영 철학, 특히 재정 철학과 연결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국정운영의 최대 관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닌 성장 중심이라면 조세행정도 이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 염려되는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내려는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을 펴기 위해 환급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면 이는 조세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감세로 인한 정부지출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상응한 소비가 미약하거나 조세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어렵게 되고 이는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행정 개혁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성의 강조는 조세행정에서 비용의 최소화로 연결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철학적인 면에서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고 그러다가 실직했는데 납부한 만큼 도움을 못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조세행정에서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의 준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세법상 통일성, 체

계성, 실현가능성이 원칙들이라 하면 조세행정에서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만 한다.

IT 시스템의 현대화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세행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납세자들의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국세행정에서 과연 납세자의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볼 때 국세청의 주도하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실패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성과가 부각되도록 하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납세자의 의식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국세행정에 납세자의 의식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무서 접근성 강화해야

이대희/ 한국행정학회 회장

최근 우리나라 납세행정은 여러 면에서 매우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몇몇 부정 사례나 일부 미진한 부분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납세의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 홈택스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 용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적은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들은 결국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세무서들이 대로변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

기보다는 너무 구석진 곳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세무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 처리하면 어떨까 싶다.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손님이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할인해 주는 식이므로 납세자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절세방안을 징수기관에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양한 절세방안을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국세청 감시장치 필요

이전오 /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자께서 외국의 국세행정 개혁사례를 깊이 연구한 결과를 잘 정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세행정 개혁을 논의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논쟁의 핵심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을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 아쉽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제도의 소개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오늘의 논의가 현실적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민주화·과학화·

전산화 등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세무행정의 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국세행정의 개혁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전문가나 국민의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야 한다.

국세행정 개혁의 핵심적 화두는 감독기구의 설치 문제와 조직개편 문제이다. 우선 감독기구 문제를 보자. 현재 국세행정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권력이 국세청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없으며, 인사와 세무조사 측면에서 세무공무원이나 국민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국세청 스스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느냐, 아니면 감독장치의 신설과 같은 제도적 충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간에 역대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자율적 개혁을 다짐했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국세행정 개혁이 논란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제도적 충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신문에 단편적으로 기사화된 국세청 감시위원회 설치 방안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감독위원회가 국세청 예산편성 및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감독위원회에 국세청장 추천 및 해임 권한을 부여하여 장차 독립적이고 정치중립적인 국세행정이 자리잡게 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위원회가 불필요하고 장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본청과 세무서의 2 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이런 체계가 행정의 효율

화와 납세자의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청-세무서 2단계의 미국식 조직에 대하여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론이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재의 6개 지방청을 없애고 조사청을 신설하면서 본청-세무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가 행정 단위의 전면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 조직의 개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울러 기능별 국세행정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OECD국가들의 사례도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큰 현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두어 가지만 들어본다. 세무조사의 경우에 세무조사 선정절차를 더욱 과학화·합리화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없애야 하고, 세무조사 규정도 가능한 한 법제화·구체화하여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청 인사기준도 내부기준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객관화 시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민간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국세청 조직의 활력과 분위기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고절차의 간소화·제출서류의 축소 등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개선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이번 국세행정 논의를 통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

세무조사에 성실신고검증제 도입 필요

최철웅/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본 연구에서 각국의 국세행정 개혁 내용을 우리나라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조세행정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가 빠진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미국, 호주, 영국은 우리나라와 납세풍토나 의식이 매우 다르다. 조세역사가 100여 년에 이르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역사는 50년에 불과하고 일본 강점기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애국이라는 신념이 있었던 적도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납세의식 수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IRS는 재무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감독기관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총리실, 국회, 감사원, 검찰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 본다. 또한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어떤 영역에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장만 이러한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의 국세청과 관련한 사태도 국세청 조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렸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국세행정 조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또다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이중고를 줄 뿐이다.

우리의 납세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뉴스레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세무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세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잘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조세행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는 세무 조사인데, 조사분야만큼은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 세무사는 현재 8,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세무법인 등에 세무조사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통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마찰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세무조사 중 대납세자, 음성탈루 사채업자, 부동산투기 조장업자, 위장가공 자료상, 변칙적 국제거래 등과 조세범칙조사는 직접 세무공무원이 조사하고 일반조사는 아웃소싱하되 세무법인 등 조세전문가 단체를 통한 '성실신고검증제'를 도입하여 자율적 신고·검증을 통해 세무법인이 작성한 성실검증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9-04

요약

- 2월 13일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경기부양법안(H.R.1)은 2009~2019년 동안 약 7,872억달러 규모로 이 중 세제관련 지원 금액은 3,264억달러에 달함
 - 2009~2019년 동안의 세제지원 중 개인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24억달러로 약 71.2%를 차지
 -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또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실업자 및 실직가구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포함
- 뉴질랜드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4.8억 규모의 조세감면안과 \$5억 규모의 공공투자사업 계획을 발표
- 벨기에, 폴란드 정부도 경기부양 방안을 발표
 - 폴란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산의 즉시상각 한도금액 인상 등을, 벨기에 정부는 부가가치세 월별 환급 대상자 확대를 추진

1. 미국의 경기부양법안(H.R.1)

- 미국의 경기부양법안(H.R.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에 따르면 2009~2019년 동안 7,872억달러 규모로, 분야별 재량지출액(Division A) 3,084억달러와 조세·실업·복지 대책(Division B)으로 4,788억달러가 구성¹⁾
 - Division B에 반영된 세제지원은 2009~2019년 동안 3,264억달러(재정지출 1,118억달러 포함)로 ㉠ 개인 조세 지원(71.2%), ㉡ 에너지 지원(6.1%), ㉢ 법인 지원(1.9%), ㉣ 제조업 회복 지원(0.6%), ㉤ 경기회복을 위한 채권발행 지원(2%), ㉦ 기반시설 금융 지원(6%), ㉧ 주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 경기회복 보조금 지원(4.4%), ㉩ 실직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7.8%)임²⁾

1) <http://www.cbo.gov/ftpdocs/99xx/doc9989/hr1conference.pdf>

2) <http://www.house.gov/jct/x-19-09.pdf>



<경기부양법(H.R.1)에 반영된 조세수입 예측>

(단위 :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09-13	2009-19
A. 개인·가구 조세 지원	△25,586	△173,163	△31,175	△229,988	△232,426
B. 에너지 지원	△393	△1,482	△1,539	△6,212	△19,963
C. 법인 지원	△39,918	△35,984	2,208	△60,587	△6,150
D. 제조업 회복 지원	△1	△174	△297	△1,031	△1,850
E. 채권발행 지원	△227	△348	△566	△2,561	△6,501
F. 기반시설 금융 지원	△179	△752	△7,085	△6,001	△19,638
G. 주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3,033	△49	132	△2,209	△74
H. 경기회복 보조금 지원	△14,041	△169	△15	△14,225	△14,225
I. 실직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	△14,465	△9,628	△1,525	△25,565	△25,585
합계	△97,843	△221,749	△39,862	△348,379	△326,412

자료 : Joint Committee of Taxation, <http://www.house.gov/jct/x-19-09.pdf>

■ 개인·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Tax relief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 Making Work Pay Credit 신설
 - 근로소득의 6.2%와 400달러(가구: 800 달러) 중 작은 금액을 2009년과 2010년 2년간 환급하며, 총조정후소득(AGI) 금액이 75,000달러(가구: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액은 감액(phase-out)
 - 상·하원 통과하면서 500달러(가구: 1,000달러)에서 환급액이 20% 축소
 - 개인·가구 소득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도에 77.8%, 2009~2019년에는 50%에 달함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2년간 확대
 - EITC : 세 자녀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45%로 인상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되는 기준소득 금액을 3,000달러로 인하
- 교육지원세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대학교육비세액공제(HOPE scholarship credit):

2009년의 교육비 지출액(2,000달러 한도)은 전액 공제하고, 2010년에는 2,000달러 초과 금액(4,000달러 한도)에 25% 공제³⁾

-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컴퓨터 관련 구입비용을 적절한 고등교육비용으로 인정
- 생애첫주택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확대
 -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8,000달러로 인상하고 24개월 이내 주택 처분시 세액공제금액을 환수하던 규정을 36개월로 완화
- 실업보험급여(2,400달러 한도)를 2009년 과세소득에서 제외
- 자동차에 대한 Sales Tax 소득공제
 - 2009년 동안 24,750달러(가구: 49,500달러)를 한도로 신차, 소형트럭, 이륜자동차, 캠프·여행용 자동차(motor homes) 구입액의 sale tax를 소득공제⁴⁾
- 최저한세(AMT)의 면제금액을 46,700달러(가구: 70,950달러)로 인상

■ 에너지 부분 지원 세제

- 재생에너지 생산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2년간 세액공제 및 재생에너지세액공제의 한도금액을 폐지
-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electric motor vehicles)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250,000대의 한도규정을 500,000대로 확대
- 에너지절약채권(Energy conservation bonds) 및 신청정재생에너지채권(New clean renewable energy bonds) 발행 한도를 각각 24억달러와 16억달러로 증액

3) 총조정후소득(AGI) 금액이 80,000~90,000달러를 초과(가구: 160,000~180,000달러)하는 경우 Phase-out 규정 적용

4) 총조정후소득(AGI) 금액이 125,000달러를 초과(가구: 250,000달러)하는 경우 Phase-out 규정 적용

■ 법인세 부분 지원 세제

- 가속상각 허용과 이월결손금(NOL)의 소급공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가속상각법의 경우 2010년까지 손금효과가 있고 2011년부터 익금으로 귀속되지만 2009~2019년까지 약 58억달러의 세제지원 효과 있음
- 이월결손금의 소급기간 확대로 2009년에 47억달러의 세수입이 감소되지만 2010년부터 세수입 증가로 2009~2019년까지 약 9.5억달러 감세 효과
- 일자리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확대⁵⁾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특정근로계층 대상자에 '실직 퇴역군인(Unemployed Veteran)'과 'disconnected youth'를 적용 대상에 추가
- Unemployed Veteran : 2001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에 퇴역한 군인으로서 4주간 주 또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자
- Disconnected youth : 고용 당시 16세~25세인 자로 6개월간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경험이 없는 자 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없는 자
- 2009년에 0.3억달러, 2010년에 0.8억달러, 2009~2019년 기간 동안 약 2.3억달러의 감세효과 예상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⁶⁾
- 2008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1일 전까지 채권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8년 이후에 과세소득으로 산입

- 2009년에 121억달러, 2010년에 228억달러, 2011년에 75억달러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이연시점 이후 과세되어 2009~2019년 기간에 총 16억달러의 감세효과 예상

■ 경기회복지원금(Economic Recovery Payment) 지급

- Social Security, Railroad Retirement, Veteran's Compensation and Pension, Supplement Security Income benefits 수령 권한이 있는 개인들에게 1회에 한하여 300달러 보조금 지급
- 2009년에 140억달러, 2010년에 1.7억달러, 2011년에 0.15억달러의 조세지출 예상
- Social Security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수령자(pensioners)에게 2009년 과세연도에 한하여 1인당 250달러의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 2009년에 0.4억달러, 2010년에 1.7억달러로 총 2.2억달러 지원

■ 실업자 및 실업가구에 대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지원

- 비자발적인 퇴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OBRA⁷⁾ 유지보험료(COBRA continuation premiums)의 65% 보조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지원
- 125,0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가구: 250,000달러)은 총조정소득(AGI)에서 감액(Phase-out)

5) 일자리세액공제(WOTC)는 특정근로계층(복지취약계층, Food stamp 수령자, 저소득 및 장애퇴역군인, 취약지역 출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임금의 4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1인당 한도 2,400달러)를 제공. http://www.taxpolicycenter.org/taxtopics/recoveryreport/unemployed_veterans.cfm

6) Deferral and Ratable inclusion of Income arising from indebtedness discharged by the repurchase of a debt instrument

7)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 COBRA법은 종전 고용주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18개월 동안 퇴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퇴직자는 보험유지 비용 상당액의 102%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http://waysandmeans.house.gov/media/pdf/110/cobra.pdf>)



- 2009년도에 143억달러, 2010년에 91억달러, 2012년에 14억달러, 2009~2019년 기간 동안 총 247억 달러의 조세지출 예상

2. 뉴질랜드

-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월 4일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촉진 정책으로 \$4.8억 규모의 조세감면안(tax relief package) 발표
 - 중소기업은 향후 4개 연도에 걸쳐 \$4.8억 규모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이 잠정세액을 산출하여 중간 납부할 때 당해 연도 성장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5% 소득증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왔으나 경기 하강기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5%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과소납부와 과대납부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각각 14.24%에서 9.73%로, 6.66%에서 4.23%로 인하하고 2009. 3. 1.부터 적용
- GST 금액을 산출할 때 Payment basis⁸⁾를 적용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 금액을 \$130만에서 \$200만으로 인상하고 GST 등록기준을 매출액 \$40,000에서 \$60,000으로 인상
- 업무관련 법무비용 중 \$10,000 이하는 발생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공제
- Fringe Benefit Tax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복리비용을 1인당 분기별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고용주 1인당 연간 한도는

\$15,000에서 \$22,500로 인상

- 조세감면안에 이어 2월 11일에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억 규모의 공공투자사업 계획도 발표
 - 교육분야: \$2억 1,670만 규모로 5개의 학교 신설 및 기존 ICT 인프라 개선
 - 교통분야: \$1억 4,250만 규모로 5개의 대규모 고속도로 확장과 소도로 및 지방도로의 개선 사업
 - 주택분야: \$1조 2,450만 규모로 10,000여개의 State House⁹⁾의 리노베이션과 향후 6개월에 걸친 69개의 State House 신축사업

3. 기타

- 폴란드 정부는 투자활성화 및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규정 정비를 위하여 개인소득세법(the 1991 Personal Income Tax Law) 및 법인세법(the 1992 Corporate Income Tax Law) 개정을 승인
 - 즉시 상각할 수 있는 투자금액(고정자산 구입비용으로 개인용 차량은 제외) 한도를 현 €50,000에서 €100,000으로 인상
 - 이는 소규모 사업자 및 신설법인에 대해 적용
 -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규모 납세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the 2004 VAT Law) 및 회계법(the 1994 Accounting Law)상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와 일치시킴으로써 장부기장을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연간 순매출액 상한을 현 €800,000에서 €1,200,000로 인상
 - 그리고 해당 납세자에 대해 €100,000을 한도로 연

8) GST 산출은 payment basis 또는 invoice basis에 따라 산출될 수 있는데, payment basis란 대금납부 기준이고 invoice basis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의미함.

9) state house란 뉴질랜드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공공주택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음.

구개발비를 즉시 비용화하거나 법상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

- 벨기에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월별 환급 대상자를 확대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능

〈VAT 월별 환급대상자〉

개정 전	개정 후
· 월별 환급은 수출 및 역내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환급대상자를 매출액의 30% 이상이 다음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에게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래(예를 들어, 외국법인과의 부동산 거래 등) - 국외에서 수행되는 거래(예를 들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 - 건설부문에서 6%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거래



| 정책 흐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 · 우대혜택 제공
-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 본 자료는 2009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입법추진 세계개편안(09. 2. 12 발표)'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2009. 3. 2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 종부, 조특, 농특세법)의 후속 조치 및 개정 시급성이 있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개정대상 시행령(5개)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법인·종부세법 관련 : 재산세제과(2150-4211~4216)
- 일자리나누기 기업 법인세 감면, 농특세법 관련 :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134)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제과(2150-4151~4154)

1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 면적기준(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해당, 지방은 제한 없음)
 - ☞ 공동주택 :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 ☞ 단독주택 :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left[\frac{\text{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text{양도소득금액}} \right] \times \frac{(\text{5년시점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기초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통보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2를 참조

- ② 일자리나누기(Job-sharing)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 고용규모 요건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 경영상 어려움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①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 ②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 ③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 :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인원 산정방법) 「직전·당해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직전·당해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직전·당해연도 상시근로자에 지급된 연간 임금(고정급 성격의 급여) 합계」를 「직전·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② 소득세법 시행령(2. 12 당정협의회시 기발표)

- 미분양주택 취득('09. 2. 12~'10. 2. 11)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상환기간 15년 이상 → 5년 이상)
 - *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연2백만원 한도)요건 완화(주택가격: 3억원 → 9억원,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 요건 폐지)

③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2. 12 당정협의회시 기발표)

-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배제 및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30%) 배제

④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신설된 감면조항(job-sharing 기업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감면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2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시행령 개정 상세 내용

1. 시행령 상세 내용

①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면적기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45평*) 이하인 미분양주택,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 분양평형 기준으로는 60평 내외에 해당
- 면적기준은 지방 미분양 해소, 외환위기 당시 입법사례 등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

②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 ① '09. 2. 12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 ② '09. 2. 12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09. 2. 12~'10. 2. 11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
- ③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

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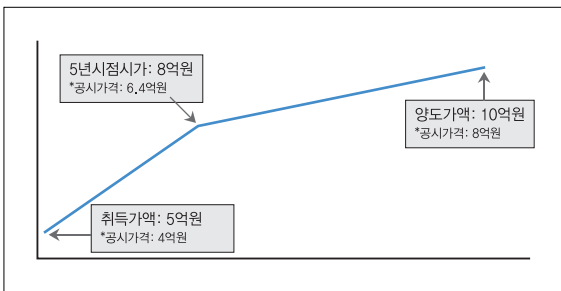
- ④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 ⑤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③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먼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당시·5년이 되는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

$$\left[\frac{\text{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text{양도소득금액}} \right] \times \frac{(\text{5년시점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text{감면대상 소득금액} = 5\text{억원} \times \frac{6.4\text{억원} - 4\text{억원}}{8\text{억원} - 4\text{억원}} = 3\text{억원}$$

*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 필요경비는 미반영

④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절차

-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09. 4. 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전체의 동·호수별 현황

** '09. 2. 12 이후 신축분양분은 최초 매매계약이 있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현황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여 날인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보관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날인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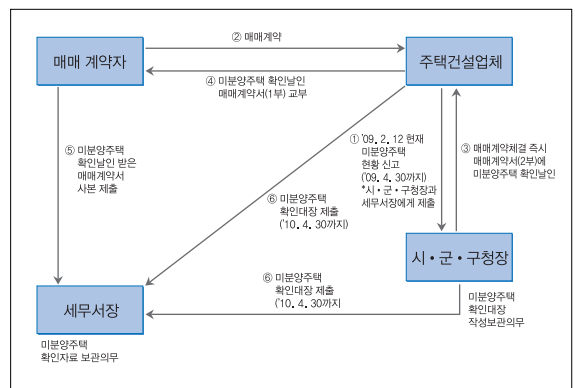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10. 4. 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09. 2. 12~'10. 2. 11까지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날인한 현황을 제출

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 미분양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계산사례〉 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2. 주요 Q&A

① '09. 2. 11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09. 2. 12(대책발표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없음

② 제3자가 '09. 2. 1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09. 6. 30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09. 2. 12 현재 미분양주택이 아님

③ '09. 2. 12~'10. 2. 11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함

④ '09. 2. 12~'10. 2. 11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분양권 상태)에 양도하는 경우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음

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인지(매매계약일인지 주택취득일인지)

■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함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 기준임

⑥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 후 분양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⑦ 계약 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율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 윤장관 “기업 신규투자 세제혜택 확대” -

* 본 자료는 2009년 3월 3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9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
 -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 수상자 및 가족,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공무원 등 약 1,200명이 참석
-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301명), 세정협조자(75명), 유공공무원(186명) 및 우수관서(8기관)에 대한 포상 수여
 - 모범납세자 중 훈장 수여자
 - 금탑산업훈장 : 고려아연(주) 최창근
 - 은탑산업훈장 : 동일산업(주) 오순택,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주) 권수근
 - 동탑산업훈장 : 화천기공(주) 권영두, (사)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하병권, 신동아건설(주) 김용선, 삼성비피화학(주) 박오규
 - 철탑산업훈장 : (주)현대백화점 경청호, 일동제약(주) 이금기, (주)우남건설 오균섭
 - 석탑산업훈장 : (주)종근당 김정우, (주)한섬 정재봉, 국제약품공업(주) 나중훈, 타이코에이애프피(주) 한치희
 - 연예인 박수홍, 최정원씨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아울러 연간 납세액(법인세 +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 1천억원 이상을 처음 달성한 14개 기업에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치하
 - '08년에 1조 900억원을 납부한 (주)국민은행은 1조원탑을 수상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년도 역점 조세정책 방향과 세정운용 과제를 밝힘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증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을 추진
 - 기업의 일자리나누기 노력과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
 - 부동산세제 정상화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설치·운영
 - 저세율 체계와 사회투명성 제고 등 변화된 세정 환경에 맞추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세금 징수를 위한 국제행정 선진화 추진 계획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 본 자료는 2009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에서 공동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최근 동유럽 금융불안,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 심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재부각
 -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시 금융시장의 불안이 “동유럽 → 서유럽 → 미국·아시아”로 파급될 우려 제기
 - 실물 경기 침체 가속화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우려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기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 ① (경상수지) 수입 감소와 여행수지 감소로 130억 불 흑자 전망
 - ② (대외채무) '08년말 현재, 대외채무는 총 3,805억불(단기 : 1,511억불, 장기 : 2,294억불)이나 최근 감소 추세에 있고 '07년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 총외채 : '07년말 3,832억불 → '08. 3월말 4,158억불 → '08. 6월말 4,217억불 → '08. 9월말 4,255억불 → '08. 12월말 3,805억불
- 총외채 중 1,027억불은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 부담 없는 외채(상환부담 없는 외채 제외시 순채권은 약 704억불)

-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총외채)은 '08년말 39%로 '08.9월말 45%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외채의 기간별 구조가 개선
- 국내은행에 대해 외국보다 매우 엄격한 기간별 외화 유동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 수준 유지
- ③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외국인 자본유출이 극심했던 '08년(약 590억불 유출)에 비해 유출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가정
 - 예)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OECD 평균(25%)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하더라도, '08년과 같은 대규모 유출(411억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 외국인주식비중(%) : ('06)35.2 → ('07)30.9 → ('08)27.4 → ('09. 2. 23)26.5
 - * 외국인채권 보유잔액(조원) : ('08. 10월)43.8 → ('12월)37.5 → ('09. 2. 24)38.5
 - 외국인 채권순매입(조원) : ('08. 10월)△4.2 → ('12월)△0.5 → ('09. 1~2. 24)3.1
- 현 외환보유액(2,017억불), 미·중·일과의 통화스와프(총 900억불)를 감안할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
- 그러나,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화 유동성과 관련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루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

외화유동성 확충

- (해외차입·채권발행) 정부(외평채)와 민간부문(공기업, 은행 등) 모두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 등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애로요인을 해소
 -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발행(금년중 60억불 발행 계획)하고 민간부문 후속 발행을 연계
- (제도개선)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걸림돌을 제거
 -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
 - 기업,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규제완화 추진

글로벌 정책공조

- (G-20) 4. 2일 런던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강화
 - 한국은 '10년 의장국으로서 G-20 중심 공조체제가 지속되도록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
- (국가간 유동성 지원 네트워크) 통화스와프를 기체결한 미국·일본·중국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유지
 - ASEAN+3 국가간 공동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CMI (Chiang Mai Initiative) 다자화 논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

대외신인도 유지

- (국가 IR) 정부 관계부처 또는 민간기관과 합동 한 국경제설명회를 해외 주요 도시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경제상황 및 정부 대응 홍보
 - * 2009년 상반기중 한국경제설명회 개최계획(안) : 2. 27(금) 동경, 3. 16(월) 런던, 4. 27(월) 뉴욕, 6. 18(목) 프랑크푸르트
- (각종 오해 해소) “3월 위기설”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국내외 언론, 신평사 대상 수시 설명)
 - 아울러, 외채 등 주요 외환통계 관련 불필요한 혼선을 해소하고, 한국경제 실상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

경상수지 개선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통해 중장기으로 견조한 외화유입 기반 조성
 - 전 정부적 총력 수출지원체제 구축 : 민관합동 수출 애로요인 T/F(가칭) 활성화, 수출보험 지원 추가 확대 검토
 -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참고 1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

현황 OECD 주요국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는 부과중

* 미, 일, 영, 독, 프,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14개국

➔ 외국인 국내 투자에 대한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이하여 국내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예)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에 우리 국채가 미편입되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불리

[참고] Citi그룹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 주요 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Index로, 동 지표를 추종하는 자산규모는 약 1조불(주로 보수적·중장기 투자자금)로 추산됨

개선 외국인(비거주자)이 우리 국채·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시스템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변경
➔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제출(4월 국회)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 외국인 국내채투자 증대,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효과 기대,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 마련(WGBI 편입시 최대 100억불 내외의 안정적 외자유입 효과 기대)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거주자 국내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 채권 양도차익에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2 재외동포 자금 유치 촉진 방안

현황 최근 재외동포의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외동포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극히 일부인 것으로 추정

• 재외동포 자금을 국내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고, 투자절차상의 어려움 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

개선 재외동포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을 실시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 조특법 개정안 제출(4월)

*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법사위에 계류중

• 비거주자가 미분양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조특법 개정안 제출(4월국회)

*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 → 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 면제 ➔ 조특법 개정안 제출(4월국회),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에 대해서만 미분양 주택 직접취득 및 펀드투자시 양도세 면제혜택 추진중 비거주자의 국내 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에 20% 원천과세 / 투자자 ID 및 전용계좌 개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동일 혜택 부여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장기가입시 원천과세 세율 5%로 인하 / ID 발급 및 전용계좌 개설 면제

3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

현황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수신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전체 외화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

* 국내은행 외화예금 잔액 : 327억불('07년말) → 404억불('08년말)

** 국내은행의 전체 외화자금 조달[부채] 중 10% 내외 수준 (원화자금의 경우 총수신 중 약 65%를 예금으로 조달)

- 해외 주요은행에 비해 매우 높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예금유치가 미약(70% 이상)이 거주자 예금)

* 국내은행 수신금리(1년 이상 정기예금 기준, 4~6%)는 해외 주요은행 금리(2% 내외)에 2~4% 정도 높은 편

개선 수출기업,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외화예금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홍보 강화

-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1만불 초과 해외 → 국내 송금시 국제청 통보제도 면제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국내은행의 금리수준, 그간의 제도개선 내역(외화예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병행

→ 국내은행의 조달금리 하락 및 유동성 개선효과 기대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1만불 초과 거액 외환송금 내역은 국제청에 통보 ■ 비거주자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 “원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해외 → 국내 외화송금시 국제청 통보 면제 ■ 출입국사실 증명 “온라인” 확인으로 간소화

4 공기업 및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원활화

현황 환위험 및 대외채무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공기업 평가 등에서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억제

*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획재정부 훈령)

→ 외국인 투자가가 선호*하는 한국물 채권 공급이 감소하여 외화유동성 유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공기업 채권은 i) 은행보다 안전하고, ii) 동일등급의 정부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해외투자가가 한국물 중 가장 선호

개선 공기업의 해외차입·채권발행에 애로가 없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공공기관 환위험관리 지침」에서 해외차입 억제 규정 완화 ⇨ 재정부 훈령 개정(3월초)
- 외화차입으로 인해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 수정(09. 9월)
- 외화자금 조달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 배정, 지원조건 등과 연계하여 해외차입 유도 ⇨ 기발표(2. 25)

현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환위험관리 지침」에서 해외차입·채권발행 억제 ■ 해외차입시 공기업 경영평가의 재무건전성 평가점수 하락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차입 억제 관련 규정 완화 ■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조치 ■ 해외차입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 지원조건 등과 연계

참고 2 경상수지 개선대책

① 전 정부적 총력 수출지원체제 구축

- 수출보험 지원규모(08년 130조 → 09년 현재 170조원) 추가확대 검토
 - * 추경 편성시 수출보험공사 출연금 확대 추진 검토
- 4월 G20 정상회의 등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자제(standstill)하도록 최대한 노력

② 서비스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日·中 등 각국 수요에 맞는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서비스 미해결 핵심규제의 조기 완화 추진
 - * (미국)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 검진, (일본·중국) 미용성형, 치아미백, 임플란트 등
 -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등 핵심규제에 대해 적극 검토
- ➔ 「09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발표(3월 말)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본 자료는 2009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9. 2. 24(화)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09. 2. 12일 당·정 협의 후 기 발표)”이 국회 재정위에서 별첨과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었음
-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일자리나누기(Job-Sharing)·사회안전망 확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등임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 유가환급금 지급 현황

1.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당 초	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주택취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2. 12~2009. 12. 31 •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0% • 감면대상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호 이상 신축주택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2. 12~2010. 2. 11(1년간) • 감면율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 (좌 동)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0% • 감면대상 주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호 미만 신축주택 추가 -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 포함

* '09. 2. 12 당정협의 후 발표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보완

당 초	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주택 펀드 세제지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 펀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미분양주택 • (추 가)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투자자 → 펀드 → 미분양주택 • 투자자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 미분양주택

※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소득세액공제(30%) 적용대상 보완

당 초	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 • 2009. 1. 1~2009. 12. 31 퇴직자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정산자, 직원이 임원 승진한 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지급받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4.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용되는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현 지 주민에대한 양도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보유토지 : 30% 감면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토지 :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이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30~50%) 감면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 등 공익사업 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 5년

※ 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 본 자료는 2009년 3월 3일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OECD는 3, 3(화) 프랑스시간 10:00 (한국시간 18:00)에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
- ※ OECD는 매년 1회(3월) 구조개혁평가보고서 (Going for Growth)를 발간

보고서 주요 내용

1. OECD 구조개혁 평가의 배경

- ①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구조개혁지수 (Structural Policy Indicators)* 개발
 - * 노동시장, 상품시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경제적 성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지수
 - 구조개혁 지수를 통해 각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개발·권고하고, 추진상황을 평가(2005년 이후 5번째)
- ② 이번 보고서는 OECD 각국에 대한 08년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다룸
- ③ 특히, 금번 보고서는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구조개혁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 권고, 기타 성장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도 다룸

2. 주요내용

(1) 우리나라의 '08년 권고 이행실적 및 추가 권고 사항

①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 완화

- * 노동시장, 상품시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경제적 성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 (이행실적) 2007년 “전기통신 정책과 규제에 대한 로드맵”으로 가격규제 및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2008년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방송통신위원회 단일 기구를 설립
- (추가권고) 통신·운송·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 촉진

②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 감축

- (이행실적)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한미 FTA는 체결 이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가장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인 가격지지 정책을 유지
- (추가권고) 한미FTA의 이행 및 다른 교역국들과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는 동시에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직불제의 비중을 확대

③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이행실적)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2008년 7월 이후 종업원 100~299인의 사업장에도 적용 확대
- (추가권고)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훈련기회 확대

④ 혁신시스템 개선

-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대학의 질 개선 및 R&D 분야에서의 대학 역할 증대를 통한 혁신 시스템 개선

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공보육 시설 확대보다 수수료 상한선 폐지 및 바우처 도입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확대

(2)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구조개혁

① 금융위기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촉진·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 성장을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

② 따라서 최근의 위기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함

- i)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특히, 저임금 근로자)
- ii) 제조업 분야의 반경쟁적 규제 개혁(특히, 진입장벽 제거)
- ii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특히, 교육인프라 분야)
- iv)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출 증대 (예: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③ 단,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1인당 GDP 성장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 조세구조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인세 및 소득세는 인적 자본 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 소비세(단일세일 경우) 및 재산세는 노동공급이나 투자, 교육 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쳐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현 위기 상황에서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단기적 총수요 부양과 장기적 노동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

② 그 외에 인구구조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효율적 사용 등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구조개혁 정책 비교〉

〈참고〉 그림을 보는 방법

- 단년도 지표를 제외하고, 03년(또는 00년)과 07년(또는 06년)을 비교
- 대각선상의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 03년에 비해 07년에 개선을 의미
- OECD 평균선보다 위쪽 또는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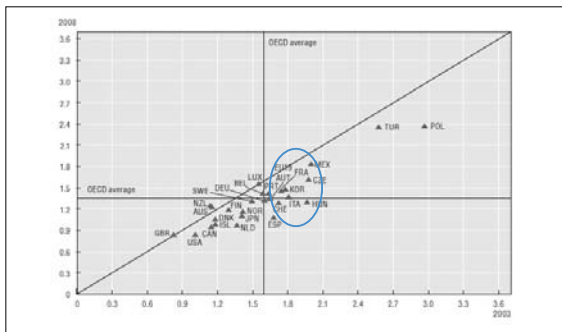
1. 상품시장 규제

- 상품시장 규제의 강도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편
- 단, 행정 규제의 정도는 03년에 비해 07년에 개선되었으며, OECD 평균보다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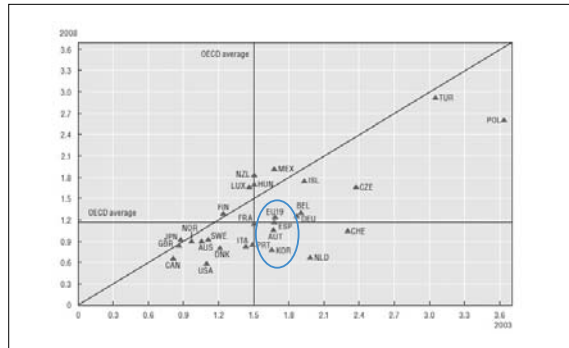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 scale of 0-6 from least to most restrictive

A. Restrictiveness of economy-wide product market regulation¹



B. Restrictiveness of extent of severit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1,2}



주: 1. Data for Greece, Ireland and the Slovak Republic are not available for 2008, and have been excluded above.

- Includes reporting, informa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s, and the burdens on business start ups, implied by both economy-wide and sector-level requirements.

자료: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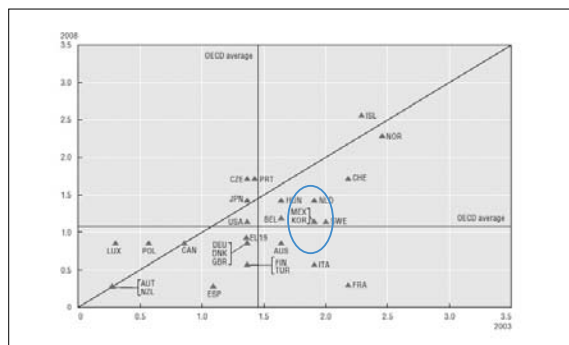
2. 진입 장벽

- 법적인 진입장벽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다만, 진입시 행정절차의 복잡성은 상당히 개선되어 07년 0에 가까운(제한이 거의 없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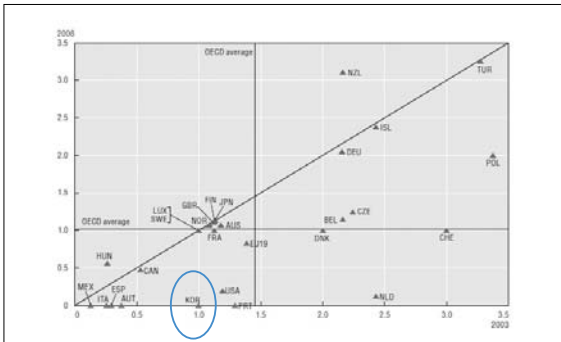
Barriers to entry

Index scale of 0-6 from least to most restrictive

A. Legal barriers to entry in industries¹



B. Complex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²



주: 1. Data for Greece, Ireland and the Slovak Republic are not available for 2008, and have been excluded above.
 2. Concerns complexity of government communication of rules and procedures as well as of licences and permit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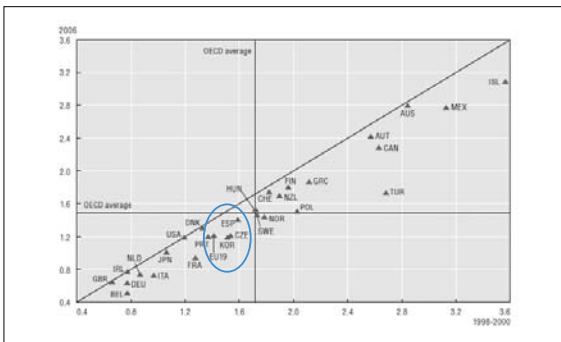
자료: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

-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소폭 개선되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관세의 중요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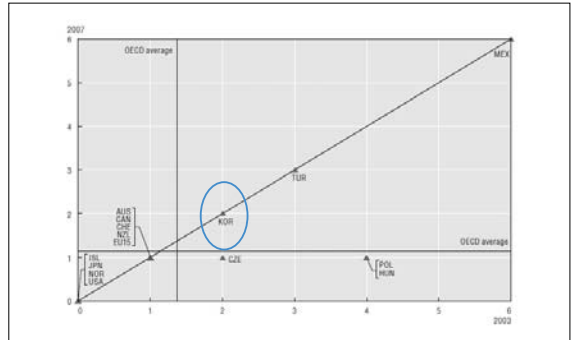
Barriers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dex scale of 0-10 from least to most restrictive



Importance of external trade tariffs¹

Index scale of 0-6 from least to most restri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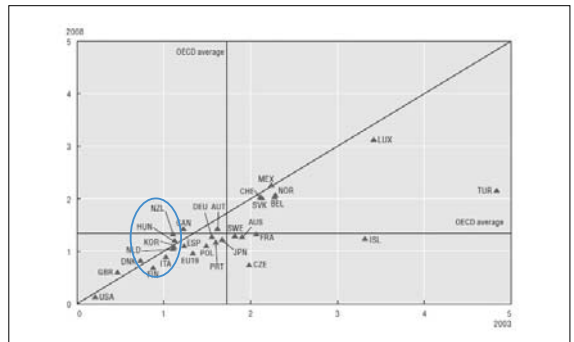


자료: Chart A: Koyama, T. and s. s. Golub (2006), "OECD's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revision and extension to more econom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525; Chart B: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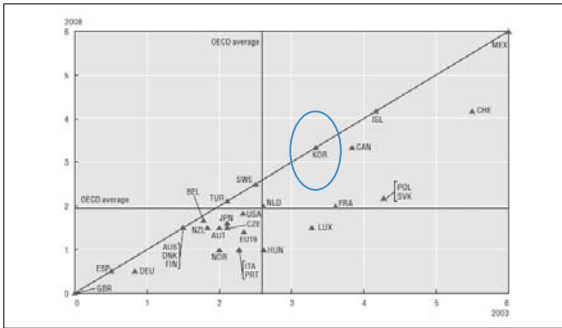
4. 업종별 규제

-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OECD평균보다 낮으나, 전기·가스분야에 대한 규제는 OECD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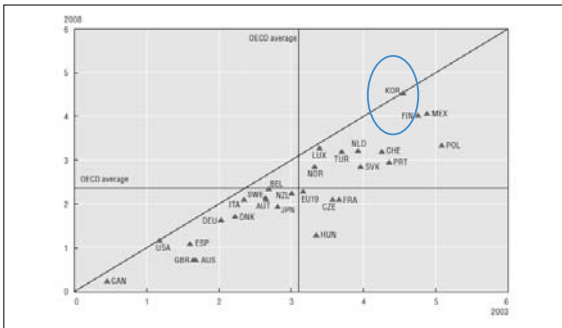
A. Telecommunications sector



A. Electricity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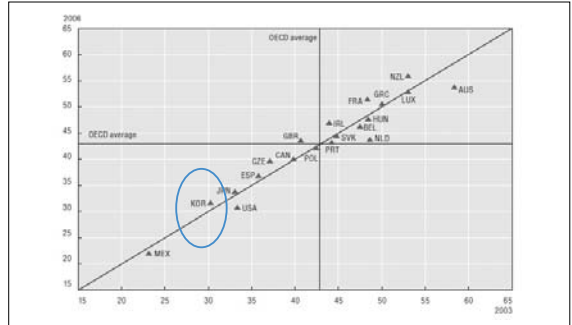


B. Gas sector



B. Minimum Cost of labour²

Percentage of labour cost of median worker²



- 주: 1. Missing countries do not have a statutory minimum wage.
- 2. Exactly half of all workers have wages either below or above the median wage. Data for 2006 for Greece, Mexico and Turkey refer to 2005.
- 3. The cost of labour is the sum of the wage level and the correspon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paid by employers.

자료: Chart A: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Chart B: OECD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and OECD, Taxing Wag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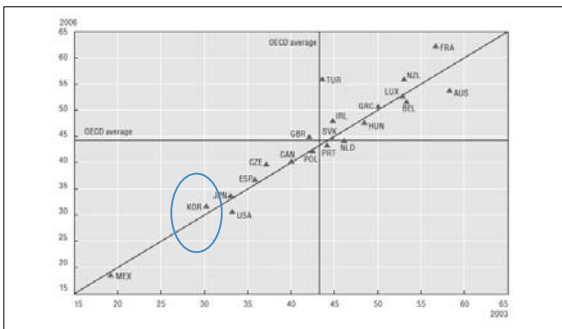
5. 노동 비용

- 최저임금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노동비용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Cost of labour

A. Minimum wages¹

Percentage of median wage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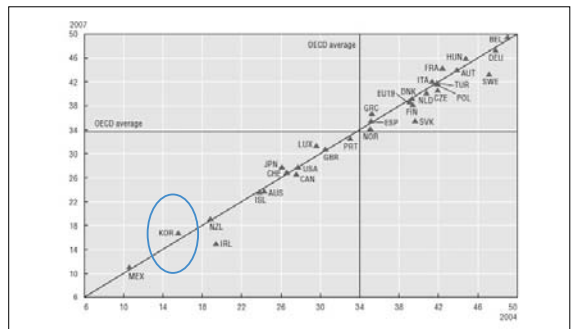
6. 조세 격차 (tax wedge)¹⁾

- 기업의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조세부담 (tax wedge)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

Average tax wedge on labour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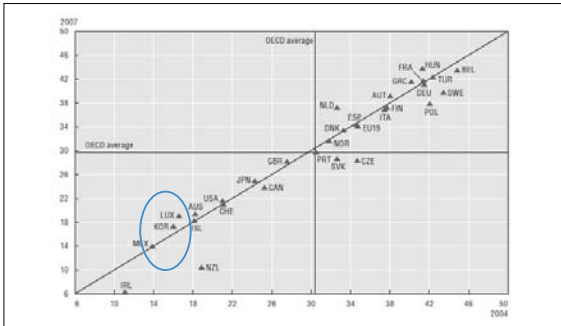
Percentage of total labour compensation

A. At 67% of average worker earnings²



1) 조세격차는 기업이 지불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받는 소득간의 괴리를 나타낸 지표로 클수록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이 커 노동 수요 및 공급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B. At 100% of average worker earnings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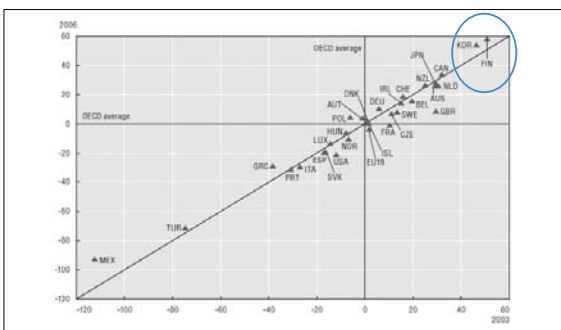
- 주: 1.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otal labour compensation paid by the employer and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2. Single person with no child.
 3. Couple with two children, average of three situations regarding the wage of the second earner.

7. 교육·보건

- 국제 학력 평가에서는 OECD 최고 수준이나, 보건지출은 낮은 편

Educational achievement

Average of PISA scor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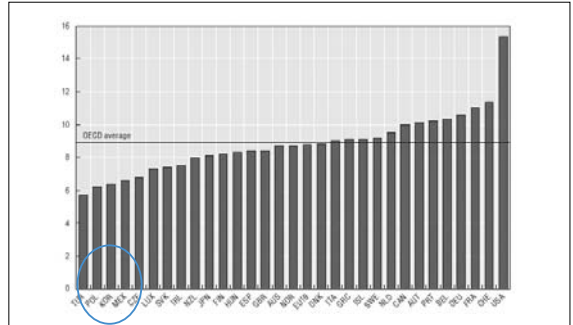


- 주: 1. PISA stands for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 For the United Kingdom, science only, and for the United States, average of PISA scores in mathematics and science.

자료: OECD, PISA 2006 Database.

Health expenditure, 2006¹

Percentage of GDP



- 주: 1. 2005 for Turkey, 2004 for the Netherlands; 2003 for New Zealand and 2002 for Den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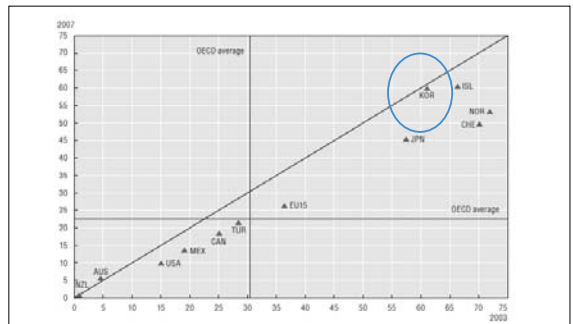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Database.

8. 농업지원

- 농업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

Producer support estimate to agriculture¹

Percentage of farm receipts



- 주: 1. A single producer support estimate is calculated for EU countries.

자료: OECD, Producer and Consumer Support Estimates Database.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 2만명에게 1,600억원을 4월말까지 지급 -

* 본 자료는 2009년 3월 10일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 의 일환으로 '08.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08. 1. 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음

- 납세자가 既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임

-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

■ 환급유형 및 예상세액: 2만명, 1,600억원

(1) '08. 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 발생: 8,500명, 1,530억원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원 → 2억원)

-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 → 5년)

-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2) 기타: 11,500명, 70억원

- 既납부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 환급절차: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하게 환급할 것임

■ 확인방법: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 예정

-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를 직접 발송

*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를 현금으로 교환하시면 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 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임

참고자료 환급금 지급 유형

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로 환급(세법 개정)

- ◆ 청주에 사는 이○○씨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08년 양도하고, 감면한도인 1억원은 감면받고 이를 초과한 1,135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 '08.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억원 → 2억원으로 확대되었음
-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확대로 환급(세법 개정)

- ◆ 대구에 사는 박○○씨의 경우 7년 보유한 대지가 '08년 수용되었으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1,448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 '08.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외가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10년 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전 취득한 토지로 확대 적용
- ◆ 박○○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하고 60%의 세율을 기본세율 15%로 다시 계산하여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272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③ 8년 자경농지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세법 개정)

- ◆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08년 양도분부터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④ 既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환급(기타)

- ◆ 서울에 사는 정○○는 '93. 11월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을 납부한 토지를 '03년 양도하고,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5,126만원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 ◆ '93. 11월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의 납부내역을 확인,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함
-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814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기타)

- ◆ 인천에 사는 김○○는 대지가 '07년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을 잘 몰라 감면받지 않고 4,273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 감면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07. 1. 1. ~'08. 12.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자를 전산으로 검색하여 감면 10%를 적용 다시 계산함
-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513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 · 우대혜택 제공

* 본 자료는 2009년 3월 4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에서 발표한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 · 우대혜택 제공」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세금포인트를 2천만명에게 부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09. 3. 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하였음
-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이 증가하였으며,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여명)으로 37.7% 증가하였음

(단위 : 만명, %)

구 분	2009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가인원	증가율
합 계	2,072.8	1,917.7	155.1	8.1
1,000점 이상	19.0	13.8	5.2	37.7
100점~1,000점 미만	231.7	197.4	34.3	17.4
1점~100점 미만	1,822.1	1,706.5	115.6	6.8

2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 '09. 3. 3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8년 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3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음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4 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 × 50% (5억원 한도)
- 예) 5억원의 납세담보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납부세액 : 10억원 (10,000점 × 100,000원 × 50%)
- 2008년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으로 전년(203명) 대비 421.7% 증가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능

*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5천만원 40만원, 1억원 80만원, 5억원 4백만원 수준

■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
- 2008년도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이용건수는 220건임

* 주요 민원증명 6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

5 성실납세자에게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 팜플릿 제작 · 배부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제도』 팜플릿을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배부하였음

- 팜플릿 : “성실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약 2,000여명 수준)

- 자체선정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 정부포상 : 훈 · 포장, 대통령 · 총리 표창

*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표창

- 타기관 추천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 우수 · 大賞 수상 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 ·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국세행정상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 ·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 을 표기하여 발급
▶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 · 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6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 개통 -

* 본 자료는 2009년 2월 25일 국세청 소득지원과에서 발표한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 국세청에서는
 - '09. 3. 3(화) 납세자의 날에 맞추어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운영할 예정임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 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 전용 홈페이지 주소 <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

- 전용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주)를 구비하고
 - 주)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금액 계산이 가능토록 하여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었음
- 또한 방문자의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어
 -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참고 1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구성 내용



① 「근로장려세제 안내」 구성

- 근로장려세제 개요 및 단계적 확대방안 소개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절차·지급절차 등 안내
-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장려금 수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기타법령, 서식마당, 사이버 홍보실 운영

② 「알림마당」 구성

- 실시간 1:1 사이버 상담, 자주 묻는 질문(FAQ) 게재
- 공지사항, 설문조사, 홈페이지 이용안내 소개

③ 「근로장려금 신청서비스」 구성

-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신청진행 상황, 근로장려금 환급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편리한 조회서비스」 구성

-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 근로소득금액, 주택 등 기준시가, 승용차 가액,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 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5%
•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 24%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사업자 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 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참고 2 근로장려제세 주요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 가능

요건	내용
① 총 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 · 환급 및 환급의 제한

요건	내용
①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
② 결정 · 환급	신청 후 3개월 내(8월) 결정,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결정 후 30일 내 환급(9월)
③ 환급제한	고의 · 중과실(2년), 사기 · 기타 부정한 방법(5년)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6월말까지 환급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 올해 2차례에 걸쳐 목적예비비로 자치단체에 9,300억원 교부 -

* 본 자료는 2009년 3월 2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월 30일 부동산교부세 4,650억을 배정한 데 이어, 2월 27일 추가로 4,650억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긴급 배정하였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 8,60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의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 경기 868억, 서울 838억, 경남 798억, 강원 751억, 부산 667억, 전북 647억, 충남 628억, 충북 519억, 인천 431억, 대구 383억, 광주 232억, 대전 212억, 제주 168억, 울산 162억원 등의 순이다.
-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부평구가 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전남 장흥, 전북 정읍, 대구 수성구, 충북 음성, 인천 연수구, 경북 영양, 광주 북구, 대구 남구, 전남 보성 등이 50억원 이상인 반면, 07년도 재산세 과지급분 정산으로 인해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한 서울 중구를 제외하고는 경기 과천이 11억원으로 가장 적게 교부되었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후자의 역할을 하는 ‘균형재원’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부분을 50%, 사회복지 관련부분을 25%, 지역교육 관련부분을 20%, 보유세 규모부분을 5%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교부 일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배정되는 것으로서,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가 일부만 배정된 것은 세수(稅收) 부족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 사정 때문으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3월 이후에 세수감소분 보전 혹은 균형재원의 형태로 자치단체에 계속 배정될 예정이다.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6조 1,875억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 및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면서 예산도 2008년 3조 1,770억원에서 2009년 1조 4,882억원으로 격감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내년 이후에도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9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억원)

시도별	누계	기 배정액 (균형재원)	금회 배정액 (균형재원)	비고
전국	9,300	4,650	4,650	목적예비비
서울	838	330	508	
부산	667	324	343	
대구	383	190	193	
인천	431	215	216	
광주	232	113	119	
대전	212	110	102	
울산	162	84	78	
경기	868	285	583	
강원	751	432	319	
충북	519	275	244	
충남	628	324	304	
전북	647	351	296	
전남	984	554	430	
경북	1,012	551	461	
경남	798	428	370	
제주	168	84	84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전국	61,875		61,875	3,930		10,200		18,892		28,853					
서울	11,306	8,321	2,985	791	2,402	142	2,688	806	2,440	2,037					
부산	6,840	4,596	2,244	611	844	106	1,797	631	1,344	1,507					
대구	5,868	4,571	1,297	281	635	58	1,739	364	1,916	875					
인천	2,198	742	1,456	231	477	72	34	412	0	972					
광주	2,486	1,705	781	187	329	35	471	216	718	530					
대전	2,231	1,473	758	81	298	36	551	216	543	506					
울산	1,001	425	576	166	215	30	28	167	16	379					
경기	5,044	2,274	2,770	349	1,801	122	124	750	0	1,898					
강원	3,177	625	2,552	175	186	133	19	736	245	1,683					
충북	1,962	230	1,732	109	119	85	2	488	0	1,159					
충남	3,115	961	2,154	73	184	113	697	618	7	1,423					
전북	2,676	453	2,223	171	183	104	98	636	1	1,483					
전남	3,738	311	3,427	157	122	171	31	990	1	2,266					
경북	4,044	641	3,403	244	248	167	90	970	59	2,266					
경남	5,034	2,347	2,687	239	568	133	1,476	762	64	1,792					
제주	1,155	590	565	65	56	26	126	159	343	380					

※ 시군구 배정액은 시도에 합산



| 재정통계 |

- 법인세 환급금
-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 법인세 소송사건

1. 법인세 환급금

(단위: 백만원, %)

연도	법인세 총징수결정액(A)	법인세 환급발생액(B)	국세 환급발생액(C)	환급금처리			비율	
				지급액	총당액	기타(미처리)	발생(B/A)	점유(B/C)
1987	1,854,814	117,248	2,836,519	107,407	9,841	0	6.3	4.1
1988	2,437,382	111,983	3,297,123	94,583	17,400	0	4.6	3.4
1989	3,495,129	291,253	3,435,697	277,969	13,281	3	8.3	8.5
1990	3,957,061	648,411	4,246,457	627,452	20,959	0	16.4	15.3
1991	5,736,541	1,011,649	5,568,061	988,468	23,168	13	17.6	18.2
1992	7,725,482	1,652,702	5,978,043	1,615,999	36,703	0	21.4	27.7
1993	8,601,450	2,481,850	7,317,098	2,437,772	44,078	0	28.9	33.9
1994	10,552,115	1,652,702	8,504,432	1,615,999	36,703	0	15.7	19.4
1995	12,180,029	3,086,321	10,614,619	3,023,824	62,453	44	25.3	29.1
1996	13,670,496	3,965,793	13,063,550	3,882,444	83,267	82	29	30.4
1997	14,299,339	4,228,708	13,621,495	4,140,294	87,877	537	29.6	31.1
1998	18,598,595	7,302,581	19,104,699	7,098,949	203,062	570	39.3	38.2
1999	20,565,740	10,190,220	21,038,012	9,884,344	304,947	929	49.5	48.4
2000	27,338,003	8,114,091	22,621,753	7,722,509	391,313	269	29.7	35.9
2001	25,889,353	7,856,877	23,387,717	7,658,732	197,614	531	30.3	33.6
2002	28,626,866	7,540,012	22,985,739	7,326,651	213,202	159	26.3	32.8
2003	32,286,140	5,387,805	23,994,463	5,179,203	207,728	874	16.7	22.5
2004	32,704,486	6,047,501	29,577,783	5,702,836	344,524	141	18.5	20.4
2005	35,818,317	4,741,429	30,736,689	4,482,494	258,673	262	13.2	15.4
2006	34,810,999	4,419,660	33,390,366	4,120,848	298,769	43	12.7	13.2
2007	40,951,515	4,331,924	36,165,613	4,080,382	251,445	97	10.6	12.0

주: 1. 총징수결정액은 내국세,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와 세외수입의 국세환급 전 합계액임.

2. 환급발생은 부가가치세영세율,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임.

3. 2005년 이후의 총법인세 징수결정액은 법인세 징수결정액(자진납부세액+고지결정세액-환급결정액)에 환급발생액을 합하여 계산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240	27	213	227	16	154	57		20	13
1966	350	13	337	337	22	259	56		48	13
1967	374	13	361	348	29	250	69		24	26
1968	408	26	382	363	32	219	112		178	45
1969	906	45	861	829	100	446	283		160	77
1970	978	77	901	947	97	503	347		370	31
1971	882	31	851	816	94	390	332		187	66
1972	1,047	66	981	962	71	579	312		526	85
1973	1,462	85	1,377	1,455	125	819	511		447	7
1974	517	7	510	513	91	206	216		178	4
1975	446	6	440	427	45	185	197		155	19
1976	429	19	410	412	58	197	157		148	17
1977	362	17	345	332	81	158	93		141	30
1978	544	30	514	533	116	268	149		240	11
1979	234	11	223	228	59	97	72		683	6
1980	281	6	275	270	63	118	89		2,223	11
1981	305	11	294	272	58	131	83		743	33
1982	333	33	300	298	74	150	74		8,663	35
1983	238	35	203	214	57	122	35		308	24
1984	206	24	182	197	57	113	27		2,546	9
1985	156	9	147	146	43	92	11		190	10
1986	141	10	131	133	43	81	9		173	8
1987	99	8	91	97	32	54	11		138	2
1988	90	2	88	89	25	57	7		156	1
1989	85	1	84	81	22	49	10		293	4
1990	98	4	94	92	20	66	6		171	6
1991	86	6	80	81	21	52	8		542	5
1992	90	5	85	87	16	66	5		274	3
1993	151	3	148	144	30	102	12		2,499	7
1994	138	7	131	133	8	103	22		2,868	5
1995	135	5	130	128	22	78	28		20,309	7
1996	128	7	121	123	13	80	30		1,761	5
1997	148	5	143	141	5	90	46		10,762	7
1998	194	7	187	184	14	86	84		8,682	10
1999	262	10	252	230	8	113	109		10,997	32
2000	301	32	269	266	7	130	129		46,895	35
2001	576	35	541	503	26	256	221		41,237	73
2002	803	73	730	697	41	370	286		34,854	106
2003	993	106	887	867	44	458	365	214,300	37,700	126
2004	1,099	126	973	976	76	519	381	380,000	45,900	123
2005	833	123	710	793	61	428	304	407,156	121,437	40
2006	637	40	597	596	43	365	188	260,481	17,044	41
2007	495	41	454	447	36	282	129	666,194	65,766	4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42	4	38	42	-	13	29		37	-
1966	56	-	56	47	-	29	18		21	9
1967	113	9	104	105	3	61	41		57	8
1968	151	8	143	128	3	77	48		440	23
1969	160	23	137	119	6	65	48		383	41
1970	400	41	359	307	43	155	109		1,793	93
1971	252	93	159	213	36	116	61		408	39
1972	381	39	342	362	32	176	154		1,801	19
1973	362	19	343	308	23	159	126		1,433	54
1974	220	54	166	194	23	111	60		987	26
1975	239	26	213	198	12	113	73		971	41
1976	480	41	439	405	21	244	140		1,691	75
1977	441	75	366	377	30	208	139		875	64
1978	743	64	679	671	32	423	216		2,879	72
1979	415	72	343	369	20	210	139		1,866	46
1980	533	46	487	487	52	292	143		2,078	46
1981	492	46	446	432	51	242	139		2,921	60
1982	551	60	491	462	34	270	158		7,924	89
1983	599	89	510	549	39	395	115		3,837	50
1984	400	50	350	354	45	249	60		3,396	46
1985	350	46	304	334	31	257	46		8,457	16
1986	245	16	229	206	19	168	19		433	39
1987	217	39	178	204	22	157	25		587	13
1988	194	13	181	180	17	141	22		1,526	14
1989	250	14	236	226	11	181	34		2,751	24
1990	328	24	304	287	15	244	28		3,106	41
1991	340	41	299	281	23	232	26		1,723	59
1992	377	59	318	331	20	286	25		1,380	46
1993	459	46	413	392	40	311	41		3,622	67
1994	497	67	430	443	13	377	53		4,733	54
1995	415	54	361	377	7	330	40		2,926	38
1996	347	38	309	314	13	263	38		7,956	33
1997	340	33	307	299	15	222	62		11,569	41
1998	425	41	384	341	10	233	98		19,651	84
1999	566	84	482	427	8	238	181		170,678	139
2000	289	139	150	245	5	112	128		70,031	44
2001	187	44	143	134	5	67	62		44,855	53
2002	246	53	193	149	6	77	66		28,292	97
2003	271	97	174	187	11	97	79	175,200	36,300	84
2004	242	84	158	178	15	101	62	147,800	26,700	64
2005	230	64	166	173	8	96	69	78,205	20,976	57
2006	171	57	114	136	7	71	58	74,903	39,541	35
2007	138	35	103	95	10	55	30	149,581	6,165	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법인세 소송사건

(단위: 건)

연 도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가패소	기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973	135	84	51	72	-	-	11	7	54	63	-	-	-
1974	111	63	48	31	-	-	17	14	-	80	-	-	-
1975	105	80	25	53	-	-	19	14	20	52	-	-	-
1976	86	52	34	43	-	-	16	18	9	43	-	-	-
1977	95	43	52	33	-	-	12	12	9	62	-	-	-
1978	115	62	53	34	-	-	19	11	4	81	-	-	-
1979	183	81	102	43	-	-	11	19	13	140	-	-	-
1980	183	140	43	76	-	-	38	29	9	107	-	-	-
1981	214	107	107	56	-	-	23	23	10	158	-	-	-
1982	235	158	77	60	-	-	30	22	8	175	-	-	-
1983	291	175	116	96	-	-	43	41	12	195	-	-	-
1984	316	195	121	99	-	-	46	37	16	217	-	-	-
1985	337	217	120	116	-	-	46	60	10	221	-	-	-
1986	316	221	95	71	-	-	26	38	7	245	-	-	-
1987	339	245	94	115	-	-	40	63	12	224	-	-	-
1988	282	224	58	88	-	-	26	49	13	194	-	-	-
1989	256	194	62	108	-	-	63	45	-	148	-	-	-
1990	250	148	102	73	-	-	50	23	-	177	-	-	-
1991	298	177	121	71	-	-	44	27	-	227	-	-	-
1992	340	213	127	108	-	-	74	34	-	232	-	-	-
1993	389	241	148	156	-	-	94	62	-	233	-	-	-
1994	353	233	120	278	-	-	95	183	-	616	-	-	-
1995	355	213	142	132	-	-	98	34	-	223	-	-	-
1996	346	223	123	123	-	-	79	44	-	223	-	-	-
1997	326	223	103	153	-	-	120	33	-	173	-	-	-
1998	282	173	109	94	-	-	71	23	-	188	-	-	-
1999	294	188	106	92	-	-	76	16	-	202	-	-	-
2000	331	202	129	76	-	-	65	11	-	255	-	-	-
2001	409	255	154	133	47	1	70	6	9	276	158	76	42
2002	451	276	175	127	23	-	88	8	8	324	186	85	53
2003	513	324	189	145	31	-	99	6	9	368	209	103	56
2004	522	368	154	154	39	1	87	8	19	368	205	108	55
2005	534	368	166	156	37	0	92	7	20	379	201	120	58
2006	549	379	170	197	65	3	100	2	27	352	167	120	65
2007	504	352	152	195	70	1	92	4	28	309	140	89	80

주: 2001년부터 자료 구분편제 변경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성장 1%P 올리려면 최대 20兆 필요”

‘국정과제 세미나’

“경제위기 극복위해 재정확대 불가피” 공감
-8% 성장때 신빈곤층 150만명 더 늘수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려면 8조~20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경제위기로 신빈곤층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 혜택의 폭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불가피”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세계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공동 대응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1%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소비진작에 나서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 8조~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지출을 집중할 경우 8조~1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성장률을 1%포인트보다 더 높이려면 재정 소요 역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지원을 위한 상품권·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는 “상품권은 소비진작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소득보전 효과는 떨어지는 만큼 저소득층에는 현금을, 중산층에는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 수를 감안할 경우 지급 규모는 3조~5조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과 투자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기업이 내야 하는 실업급여 기여금 1년간 한시적 면제 ■신규 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2년간 면제 ■실업급여 총지급기간 7개월로 연장 ■실직근로자 건강보험료 정부 대납 등을 제시했다.

◇ “경제위기 심화되면 신빈곤층 150만명 늘 수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최고 150만명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내총생산(GDP)이 4% 성장하면 32만명의 신빈곤층(위기계층)이 새로 발생하고 -4%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추가로 120만명의 신빈곤층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우리 경제가 5~8%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소 150만명 안팎의 신빈곤층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신빈곤층으로 추정되는

인구 282만명을 합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말 신빈곤층의 규모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4,816만명)의 10%에 육박하는 43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이 같은 신빈곤층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보장제도(National Security System)’라는 신개념 사회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기가구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고액 진료비의 대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빈곤층 아동의 11%가 부모가 실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빈곤지역 아동의 91%가 통합아동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을 위해서는 식비·교통비·교육비·의료비에 쓸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미분양주택 조기 소진을 위해 양도세 면세 기간을 수도권은 5년, 지방은 10년으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을 폈다.

(한국일보 2009년 3월 11일자)

[쉽게 풀어쓰는 경제]

소비쿠폰 효과 달인 지급얼까?

세계 각국 현금·상품권 뿌려서라도 소비 살리기
현금은 통장에 잠들 우려·상품권이 소비진작효과 더 큰 편
쿠폰 효과 거두려면 백화점부터 구멍가게까지 쓸 수 있어야

소비쿠폰보다는 바우처가 정확한 표현

최근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

권을 나눠줘 생계비를 보조해주고 추락하는 내수도 부양한다는 게 목적이다.

소비쿠폰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정책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소비쿠폰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우처(voucher)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바우처란 호텔에서 주는 아침식사권처럼 현물이나 서비스로 교환 가능한 증서를 말한다. 반면 쿠폰(coupon)은 통상적으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해 살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발행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발행할 때가 많다. 정부가 직접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에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는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식품 구매권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유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있다.

정부는 특정 물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집단에 직접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들이 민간 시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바우처를 제공받은 사람은 직접 훈련 서비스를 민간시장에서 공급받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정부 기능 중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정부 기능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이다.

현금·직접 서비스에 비해 효율적인 바우처 정책

그렇다면 왜 정부는 특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현금 지원이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바우처라는 정책수단을 택하는 것일까.

우선 직접 서비스 대신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이다. 어떤 서비스를 정부보다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대신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편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금 대신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면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밥을 사먹는 대신 술을 마시거나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품구매권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술·마약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개인으로서는 현금을 받는 것이 더 좋겠지만, 정부 관점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상품권이 현금보다 소비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일본은 1999년 이 같은 방법을 썼고, 대만과 중국 등에서 최근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품권 사용과 현금화에 대한 제한

그렇다면 상품권 지급은 현금 지급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소비 촉진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품권을 지급받은 개인이 그것을 모두 소비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현금 지출을 줄인다면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상품권 지급과 현금 지급의 구체적인 차이는 상품권 사용과 현금화에 대해 어느 정도 강한 제한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용도가 특정 상품에 국한될수록, 그리

고 사용기한이 제한될수록 상품권 가치는 낮아진다. 구두 상품권이 백화점상품권보다 더 큰 폭으로 할인돼 유통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부에서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상품권을 지급하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배포한다면 문화 분야 소비가 늘어나고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책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수단

상품권을 나눠줄지, 현금을 나눠줄지는 정부가 어떤 정책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금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아 활용도가 높다. 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 통장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상품권은 관리가 불편하지만 특정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100% 유통이 확실하다. 따라서 소비 진작 효과는 상품권이 훨씬 크다.

특정 산업이나 소비 진작에 좀 더 큰 비중을 둔다면 상품권 지급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용도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는 일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100만가구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월 15만~20만원씩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제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유통체계 확립이 필수다. 백화점과 할인점 같은 대형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상점과 구멍가게에서도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을 헐겁게 넘겨 현금화하는 이른바 쿠폰깡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매일경제 2009년 3월 9일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 장기보유면 30% 특별공제

정부, 부동산稅 개편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 시 최대 30%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무거운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탄력 적용을 통해 비업무용토지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조세연구원, 그리고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세율 인하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동시 추진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이렇게 해야 징벌적 세금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가구2주택자는 50%(2010년까지는 일반과세), 3주택자는 60%(2010년까지는 45%) 양도세가 증가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6~35%(2010년 이후에는 6~3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역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유 기간 내 평균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제는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주택자는 연간 8%포인트씩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다주택자는 평균 물가상승률 수준인 3%포인트가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특별공제가 이뤄지는 반면, 2주택자 이상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2009년 3월 6일자)

[납세자의 날 좌담회]

“민간 활성화에 세제개편 초점 맞춰야”

“저소득층 지원위주 추경편성 바람직”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맞아 조세와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지는 ‘제43회 납세자의 날’(3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안중범 한국재정학회회장(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백웅기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고광철 한경 부국장 겸 경제부장)=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떤 세제 지원이 필요한가.

▶윤영선 실장=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업 투자 확대, 서민층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잡 세어링(일자리 나누기)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 중이다.

▶백웅기 실장 = 감세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실제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 미국도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놨지만 ‘급하게 내놓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안중범 회장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조세보다는 규제 완화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본다. 너

무 빈번한 세제 개편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

▶윤 실장 =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작년
에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60% 세율 등은 조세원칙에
도 맞지 않는다. 세율이 아니라 규제적 성격이 있다. 올해
는 작년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추진하지 않겠지만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해 개인 소득을 보전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원윤희 원장 = 세제 개편의 방향은 앞으로도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물론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과도한 세율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사회 = 각국이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바람
직한 재정정책은.

▶원 원장 = 각국이 추진 중인 감세 및 재정정책을 보
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확실한 '타기팅(목표)'과 한시적
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
칙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저소득층에는 소
득 감소에 따른 보전을, 고소득층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권오봉 국장 = 주요 선진국의 경기 부양 대책을 보면
세제 감면,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등을 조합하고 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 감면과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에, 일본은 저소득층 지원에, 중국
은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어려운 계층 지원에 무게를 두고 준비 중이다.

▶사회 = 어느 분야에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지도 고민
해야 될 문제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최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에서 무엇이 필
요한지를 따지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중요하
다고 밝혔다.

▶안 회장=맞는 말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야 간
다툼이 많을텐데, 규모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우선 예산 투
입 사업 순위를 정했으면 한다. 추경 규모를 놓고 싸우다

보면 실제 투입해야 될 사업을 못 찾는 일이 허다하기 때
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즉각적인 효과
를 보기 힘든 SOC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저소득층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백 실장=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
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의 상충은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면 미래 성장 잠
재력을 갉아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산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듬해 예산
안 제출에 앞서 그해 상반기에 미리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사회=국세청장들의 잇단 구속을 계기로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실장=국세행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성실한 사업자일지라도 주요 권력기관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국세청은 두려워한다고 한다. 지
금과 같은 대면행정이 아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비(非)대
면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금 납부 형태를 보면 전체
국세의 96.4%가 자진신고로 들어오고 2.1% 수준이 세무조
사를 통해 징수된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해 시스템 세정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원 원장=과거에 비해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서비
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세행정은 '권력행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국세행정은 '서비스 행정'이고
'조정 행정'이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
록 도와주는 게 국세청의 일이다. 납세자를 세금을 거둬야
할 객체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로 보는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다.

▶안 회장=국세행정의 틀을 정보기술(IT)과 접목시켜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는 납
세서비스 제공과 세무조사다. 납세서비스는 대부분 인터
넷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세무조사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세원이 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재정포럼

2009년 3월호 통권 제15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9년 3월 16일 발행 / 제14권 제3호(통권 제15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